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원 순

피신청인 : (주)조선방송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1. 0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201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허벅지 통증으로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해 12월 재검에서는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병역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해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 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박시장의 아들, 몇 달 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허리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작년 8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양손으로 입양돼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아들의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축구시합에서 부상당한 후유증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박씨는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박 시장 :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취재”

▷ 리포트 :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밤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2. 내 용 : 본 방송은 2012년 1월 5일 밤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작년 8월 공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했으며,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려워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 군지정 병원 등에서 확인한 결과, 박씨가 작년 현역병으로 입영 후 나흘 만인 9월에 귀가 조치된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하반신이 저리고 허리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입영통지를 받은 후 군지정 병원인 해민병원에서 12월9일 정밀재검을 한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지병 때문에

12월 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시장의 아들은 평소의 지병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본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병역을 회피하려는 어떤 의혹도 없으므로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TV조선은 지난 5일 <9시 뉴스 ‘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현역 입대했다 귀가한 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작년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을 회피한 적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의 <9시 뉴스 ‘날’> 프로그램(21:00~22:00)에서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때 자막은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tv.chosun.com>)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2. 0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7일자 21: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제이티비씨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1.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전하면서 협회 관계자인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담당 기자로부터 취재연락을 받은 후 단순한 질의응답을 하였을 뿐 해당 통화내용이 방송에 보도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이 마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jtbc: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내 용 : ▷ 앵커 :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후원금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1만 4천여 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주유소협회. 2년 전, 이 협회 공금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 협회 관계자 : 출금 전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 기자 : 협회 간부에 따르면 문제의 돈은 협회 계좌에서 전국 시도 지회 계좌로 이체된 뒤 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겁니다. 협회 간부들은 특정 상임위를 겨냥한 이같은 로비를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습니다.

▷ 협회 관계자 :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네요.

▷ 기자 : 협회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에 나선 것은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 해섭니다.

▷ 협회 관계자 : 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한테 줬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밖으로 새면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로비자금으로 줬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 기자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고 회원들 간에 논쟁도 벌어집니다. 협회 공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후원금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 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협회 내부자 고발’ 관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26일 jtbc 뉴스 프로그램에서 “협회 내부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협회 관계자’라는 자막과 함께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네요.’라는 멘트를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부 고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자 jbc <뉴스10> 프로그램 [주유소협회, 불법후원금] 제목으로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금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진술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불법 후원금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의 방송 보도에 사용된 변조 음성만으로는 그것이 신청인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변조 음성이 신청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1. 30.



사례 3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11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피신청인 : 부산일보 주식회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해당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벌이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 또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언론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부산일보가 오래 전부터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확실히 보장하여 편집권 독립을 수호해 왔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 단체는 이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순수한 공익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피신청인은 2012. 05. 04.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25개의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반론청구(2012부산조정12)를 제기하였고,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2012부산조정11)과 같이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내 용 : 부산일보 노조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향해 정수재단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

을 열었다. 회견에서 노조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말로만 정수재단을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관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박 의원이 평소 그토록 강조하는 신뢰와 원칙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며 “앞에서는 번듯하게 말하고 뒤로는 집착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얼굴의 지도자로는 대선에서 희망이 없고, 만약 당선 되더라도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수재단은 5·16장학회의 후신으로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박 의원이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84)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부산일보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단과의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는 노조에 부산일보 사장이 징계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사전정지 작업”이라며 “명목상의 이사장과 사장을 내세워 부산일보를 간접 통치하고자 하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언론노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고 발뺌하는 것이 박근혜의 원칙이냐”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며 측근을 이사진으로 구성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과 다른 점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부장은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서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한편 부산일보는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 지부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일보 기자회견이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편집국장도 징계에 반대하는 서한을 사내게 시판에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 한겨레신문지부장, 강○○ 경향신문지부장, 이○○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 전자신문지부장 등 언론사 노조위원장들은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부산일보 조합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혀 언론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 : (2) 『충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내 용 : 부산일보 노조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언론으로서의 공정성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배경·전망

△배경=지난 2004년 4월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치렀던 17대 총선 당시 부산일보의 논조에 대해 안팎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불거졌었다. 이 사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되면 또다시 공정보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005년 물러났으나 청와대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 최필립(84) 씨가 후임 이사장을 맡음으로써 그 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간접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이던 김지태 씨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사와 부동산 등을 5·16 쿠데타 정권이 강제 헌납 받았으므로, 이 헌납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5·16장학회(이후 정수장학회로 명칭 변경)의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일보 MBC 경향신문 등 정수재단 관련 언론사 노조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수재단의 이사진 교체와 재단명칭 변경, 부산일보 경영진 임명절차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요구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공익법인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재단 이사진에 친인척이나 지인을 앉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여타 사례들과 정수재단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전망=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정수재단 문제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불거짐으로써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공공성 확보와 공정보도 수호를 위해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수재단이 쥐고 있는 ‘경영진 선임권’을 민주화하자고 요구해 온 이○○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을 사측이 중징계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정수재단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수재단 문제를 제기할 뿌리를 잘라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통 큰 기부를 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와 대비해 박 전 대표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의 핵심에 있는 정수재단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일보 :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내 용 : 정문지필을 위한 부산일보 사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불붙었다.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 끝에 회사 측이 30일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회사는 또 이후에도 기사가 문제가 되면 신문 발행을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이를 사측에 의한 ‘신문 발행 거부 사태’로 규정하고 편집권 독립과 신문 발행 정상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일보 사측은 이날 편집국이 부산일보의 노사갈등 내용과 그 전말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실자

사장 명의로 운전기를 돌리지 말 것을 지시, 이 날짜 신문발행이 중단됐다. 또 부산일보 인터넷 뉴스사이트도 폐쇄했다. 부산일보의 운전기가 멈춰 선 것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 투쟁 이후 23년 만이며, 사측이 신문발행을 거부한 것은 65년 부산일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29일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에게 면직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렸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 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이○○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30일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대기 발령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또 회사 기강 문란 등의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 게재를 강행할 경우 무기한 발행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박근혜 의원을 상대로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과 현 경영진 퇴진,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편집국 부장단과 기자들도 편집국장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현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결의했다.

유례없는 부당 징계 남발과 신문 발행 중단 사태에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30일 오전 부산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트위터(twitter.com/busantweet) 등에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투쟁을 지지하는 독자와 시민들의 격려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부산일보의 발행 중단 사태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신문발행 중단 사태는 편집권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반증으로 정수재단의 사실상 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논평을 통해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수재단의 실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또다시 침묵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행 노동법상 사장 임명 방식과 같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노사 협의나 합의의 사안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노조의 침해나 간섭은 불법”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노조 위원장과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내 용 : 정치권은 부산일보 경영진의 노조위원장 및 편집국장 징계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조속한 신문발행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산일보 문제와 관련, “편집과 지면 완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영진이) 윤전기 가동을 중단시켜 신문이 발행되지 않은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태”라며 사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편집국장과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수재단 전 이사장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편집권 독립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노조와 기자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0일 긴급논평을 통해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한 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절차를 강행한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수재단의 사회적 환원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정수재단의 전 이사장인 박근혜 의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부산일보 경영진의 징계 추진은 언론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언론사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부산시당 유기준 위원장은 이날 본사로 전화를 걸어와 사측의 징계와 신문발행 중단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것 같다. 더욱이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강 이남의 최고 일간지인 부산일보가 사내 사정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신문발행은 그날그날 독자와의 약속인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내 용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정수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부산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최필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수재단 이사장 자리에 직접

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2005년 3월 최필립 정수재단 이사장이 취임 직후 노조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맡게 됐다’며 이사장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본인으로부터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만난 자리에서도 최 이사장은 ‘부산일보가 행여라도 노조의 강성 투쟁으로 문을 닫게 되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뵈면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부산일보가 박 전 대표에게 잘 해준 게 뭐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해 재단 이사장이 여전히 박 전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재단 측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권 문제는 전적으로 부산일보 구성원에게 일임했으며, 재단이 이에 대해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도 5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이고, 2005년 퇴임 이후 재단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만 부산일보가 저렇게까지 된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수재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부산일보 노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편향 논란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경영진 선임제도를 마련해 사주인 정수재단과 협의키로 했지만, 사측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위원장 해고와 신문발행 중단 등 과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과 편집권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종사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바르며, 박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중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일보 회사 측은 이○○ 편집국장과 이○○ 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출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과 노조는 5일 오전 11시 부산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진의 신문 발행 거부로 지난 30일자 부산일보가 발행 중단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사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노-사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부산일보 :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내 용 : 부산일보 직원들의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수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노조와 편집국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신부와 이○○ 경실련 상임고문, 향토사학자 최○○, 소설가 이○○ 씨 등 부산지역 원로 인사 21명은 정수재단의 실질적인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6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의 원로 인사들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원로 인사들은 “부산일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초유의 신문사 파업이 진행될 당시 전 시민과 함께 우리도 함께 참여했던 사실과 그 애착 때문이다”며 “박근혜 의원과 정수재단에 의해 또다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이 유린된다면 독자들과 부산 시민 전체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공정정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강 이남의 최고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동참을 결의했다.

부산지역 43개 주요 시민단체와 야5당이 소속된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일 부산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일보를 지키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측의 지시로 지난 11월 30일자 신문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인해 피해를 입은 독자와 광고주들을 규합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일보 독자 릴레이 1인 시위’ 등 범시민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야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의 격려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유시민 통합신당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민병렬 · 고창권 시당위원장과 함께 본사를 찾아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6일 오후에는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김영희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본사를 방문해 성원을 보냈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오후 강용호 민주당 중앙위원과 함께 노조와 편집국을 지지 방문했다.

부산일보 : (7)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뚝고 직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내 용 : 부산일보는 지난 1988년 파업으로 기자들이 편집국장을 뽑는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단이 일방적으로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산일보 직원들의 요구는 추천제 등을 통해 사장선임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군사정권 시절 강탈한 장학재단을 온전하게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을 완결짓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 벌어지는 최근의 사태를 부산일보 직원들은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라고 부른다.

■ 윤전실로 간 기자들

지난 1일, 이른 아침부터 부산일보 4층 편집국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전날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측에 의한 신문 발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 탓이었다. 부산일보 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실린 신문은 절대 발행할 수 없다’며 제작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켰다. 신문이 결간되자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발행 원인을 아는 독자들의 격려 전화도 하루 종일 편집국에 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신문은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자들과 제작, 광고, 독자서비스국 등 직원들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한마음이었다. 4층 편집국에서 편집을 마친 기자들이 부산일보 3층 제작국으로 몰려갔다. 필름 제작이 완성되자 이번엔 윤전기가 있는 지하실로 달려갔다.

육중한 윤전기에 한 장 한 장 지면 인쇄용 판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 노조 위원장이 가동 버튼을 눌렀다. 굉음을 내며 윤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치 신문의 1면 제목은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선언’이었다.

■ 멈출 수 없는 신문

“신문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보의 흐름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이다. 독자와의 약속인 신문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발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이○○ 교수는 신문은 사회의 공적인 그릇이기에 편집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유권은 경영적 책임이고, 편집권은 제작의 책임으로 각각의 구조가 역할 분담을 해야 정론 기능이 가동되기 때문에 편집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 교수도 “신문 발행은 상식”이라며, “매일 신문을 내기 때문에 일간신문인데 독자와의 신문 발행 약속을 못 지키면 존속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신문 발행을 거부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채○ 교수도 “신문 발행은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이자 독자와의 어길 수 없는 약속”이라며 “방송으로 치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사태다”라고 규정했다.

■ 제2의 편집권 독립

언론학자들은 소유권과 편집권을 신문사를 구성하는 두 개의 권리라고 규정한다. 신문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경영권이 있다. 사주나 경영진은 경영을 책임지고 기자들은 콘텐츠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제작 자율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론학자들은 주장한다. 신문제작의 자율적 권리인 편집권이 경영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신문을 조간으로 할 것인가 석간으로 할 것인가부터 보수층을 대변할 것이냐, 진보적인 색채를 띠 것이냐는 광의의 편집권은 공유되는 게 맞지만 신문제작에 관한 편집권은 기자들이 있는 편집국 전체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도 “신문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기업인데 역사적으로 언론의 영향이 막강하다 보니 사회 기득권층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이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집권은 꼭 지켜져야 할 가치다”고 제시했다.

부산일보 : (8)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내 용 : 노조원들은 파업 기간 특보를 만들어 돌렸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부일노조의 편집권 독립은 한국 언론사의 큰 분수령이 되었다. 자유언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 돌 맞던 신문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온 거리를 메우던 1987년 6월, 남포동에서 시작된 시위 행렬은 부산역을 지나 동구 초량동에 이를 때쯤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서면로터리를 향해가던 시위 군중들이 당시 초량 근처에 있는 KBS 앞을 지날 때쯤 술렁이기 시작했다.

“관제방송 물러가라” “KBS는 각성하라.” 시위대가 던진 돌에 건물의 유리창이 순식간에 박살났다. 그 시위대가 부산진역을 지날 즈음. 이번에는 부산일보 건물에 돌이 날아들었다.

“어용언론 각성하라.” 이 광경을 취재하던 모 기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문사가 시위대의 돌에 맞는 것을 보며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해 겨울 관제언론이라는 비판을 받던 부산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래 노동조합을 만들자.” 6월 민주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항복 선언으로 마무리 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 봇물 터지듯 시작했다.

기자들도 자유언론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겨울인 1988년 1월 22일 부산일보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 혹독한 기자 탄압

돌이켜보면 부산일보의 노동조합의 역사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6년 9월 10일 부산일보가 창간한 이래 기자들의 크고 작은 편집권 독립 요구가 있었다.

1948년 당시 부산일보 기자들은 공정보도와 공정인사를 요구하며 최초의 파업을 했다. 기자 11명이 해고되었다. 자유당 정부의 신문법 제정에 맞서 ‘언론자유와 제한의 가부 제고찰’이란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부산일보의 경영권을 거머쥐고 제작 간섭이 노골화 됐지만 1964년 11월 24일 ‘다시 언론자유를 생각한다’는 칼럼이 지면에 실렸다.

서슬 퍼런 유신 시대이던 1973년 6월 편집국 기자 전원이 공정보도 등을 요구하며 일괄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 다음해인 1974년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 3개 항의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6년 5월 기자들은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의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당시 윤○○ 사장과 김○○ 상무가 좌지우지 했던 편집국 제작회의를 편집국장 책임 체제로 환원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1987년 6월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인 4·13 호헌에 맞서 편집권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기자들이 해고되고 지방으로 전직되었다.

■ 민주언론의 횃불

언론사에 보안사 요원들이 상주하던 시절이었다. 편집국장이 대장(인쇄 직전의 지면)을 보기도 전에 보안사 요원들이 붉은 사인펜을 들고 기사를 검열했다. 재단이 임명한 사장은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

1988년 2월 당시 편파보도의 지시자이던 윤○○ 사장은 주주총회 때 물러가겠다는 기존 약속을 저버리고 상무이사만 퇴사시킨 뒤 종전의 제작 태도를 고수했다. 기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을까.

‘우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인 공정보도의 실현은 물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부산일보 노동조합 결성 취지문의 한 구절이다.

기자들은 파행적으로 발행되는 굴절된 지면을 여건 탓으로만 돌려왔던 태도를 반성했다. 부산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천명했다. 노동조합 설립만이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정신을 살리고, 언론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임을 굳게 믿었다.

6일간의 파업 끝에 기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편집국장을 선출하는 편집권 독립의 실체인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회사로부터 따내며 승리했다.

언론 자유의 교두보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한국 신문 역사상 유일한 이 제도는 ‘편집권 독립’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부산일보의 소유

자인 정수장학재단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였다. 사측은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할 때마다 ‘편집국장 3인 추천제 철폐’를 들고 나왔다.

부산일보 :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내 용 : 1962년 7월 5·16장학회가 출범했다. 김지태 씨로부터 강탈한 부산일보와 MBC 등이 기본 재산이었다. 김 씨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됐다.

이 모든 과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 당시 기부승낙서에 김 씨의 날인을 받은 고○○ 전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62년 6월께 ‘중앙정보부가 김지태 씨한테서 기부 받아둔 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박정희 장군의 지시를 받고 부산에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이후 5·16 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동창, 행정부 각료 등이 이사장과 이사진을 장악했다. 이를 두고 백원우 국회의원은 2005년 “완벽에 가깝게 박 전 대통령의 사유 재산화 됐다”고 말했다. 부정축재를 했다는 이유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결국 자신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6장학회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2년 1월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꾼다. ‘5·16’이란 이름을 바꾸라는 전두환 정권의 요구에 박정희의 ‘정(正)’자와 육영수의 ‘수(修)’를 따서 개명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부정축재의 유산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고스란히 승계됐다. 80년대 들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리에는 조○○(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 김○○(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김○○(정수장학회 출신자 모임 상청회 고문) 씨 등 박 전 대표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앉았다. 박 전 대표는 1995년 직접 나서서 2005년 물러날 때까지 10년간 이사장을 지냈다. 연봉은 2억 5천만 원까지 받았다. 2005년 정수장학회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박 전 대표는 이사장 자리를 박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의 최필립 씨에게 넘겨준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이사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지배권이 여전히 박 전 대표에게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일보 :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내 용 :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 유력 일간지가 힘을 못 쓰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그것은 바로 부산일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부산일보는 일찍이 편집권이 독립되어 공정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

다. 88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편집국장을 기자들의 투표로 선출했고, 사장은 그 편집국장의 편집권을 인정했다. 일선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산일보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전국 최대의 지방지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20여 년 넘게 이어온 부산일보 편집권이 훼손될 처지에 있다.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이다.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만 열심히 하면 될 일이고 부산일보 경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그 길이 독립정론지로 거듭나 부산시민과 독자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사 간의 대립이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12월 1면 ‘흠어진 해양정책 통합 총괄행정기구 서둘러야’ 같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부산일보의 자랑이다. 3면이 바다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다. 해양항만은 국토부가, 수산분야는 농림수산부가 가지고서는 종합적인 해양수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해양경찰이 순직한 일은 해양분야 총괄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14일 1면 ‘철강신화 지다’에서 박○○ 포스코 명예회장은 분명 공과가 있는 사람이다. 과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쉽다. 14일 3면 ‘일본 사죄 때까지 저승에서 1만 번이라도 외칠 겁니다’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의제로 다름지예에 대한 보도도 기대하게 한다.

15일 1면 ‘연 459억 원 시민혈세 나갈 판’에서 459억 원은 거가대교의 예측통행량 부족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물어 줘야 할 세금이다. 민자사업은 바로 세금 먹는 하마였던 것이다. 부산은 북항대교 천만산터널까지 만들어지면 유료도로 천국이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6일 1면 ‘취업률 부풀리기 목숨 거는 대학들’과 3면 ‘실적 낮으면 재정지원 제한 돈줄 마른 대학 편법 총동원’ 기사는 좋았다. 보통 사회현상만 이야기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없이 넘어갔는데 사회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안까지 보도한 것이다.

예산을 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급한 것 먼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16일 5면 ‘동래 금강공원 새 단장 950억 투입 드림랜드 조성’이란 기사를 보면서 씁쓸했다. 제2의 도시에 동물원 하나 없는데 그 동물원 공사가 몇 년째 답보상태인데 다시 금강공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안타깝다.

17일 12~13면 ‘人 + 間’을 잘 보고 있다. 부산지역 인물에 대한 심층보도가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이번 주 윤○○ 교수에 대한 이야기도 순탄치 않게 살아온 삶이 내일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

등을 주리라 생각한다.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지역의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하는 부산일보가 또다른 자랑이다. 이런 부산일보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부산일보 :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내 용 :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부산일보의 가장 큰 잘못은 지난 11월 30일 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던 기자들에 의해 처음 있는 뒤 두 번째이며, 23년 만의 일입니다. 회사 측이 발행을 거부하기로는 65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애독자 제현(諸賢)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독자 제보와 항의 전화 창구인 사회부 데스크의 전화통이 요란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신 분들은 주로 필자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계속되면 신문을 끊겠다’는 말씀을 남기시더군요. 본보에 대한 애정에 감사하면서도 얼른 사태가 해결돼야겠구나 하는 조바심이 교차하였습니다.

애독자들의 질정(叱正) 가운데 가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왜 내부 문제를 지면에 담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독자에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외면한 채 내부 다툼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편집권 독립이 아니라 편집권 남용이며, 지면의 사유화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좁게 보면 내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징계 문제였으니까요. 노조위원장은 면직, 편집국장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징계는 사실상 해고조치로 노조의 견제와 기자의 편집권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정수재단의 사회환원 및 부산일보 사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고, 편집국장은 이 내용을 보도한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넓혀 보면 이 문제의 뿌리는 아픈 현대사에 닿아 있습니다. 부산일보의 원 소유주는 부산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고 김지태 씨였습니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 거사 자금을 거절했다가 1962년 군부정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강탈해 만든 게 현재 부산일보 주식의 100%를 소유한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입니다.

정수재단 이사장은 한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였다가 2005년부터 그의 비서 출신인 최필립 씨가 맡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지난 1988년 파업을 통해 재단의 간섭을 물리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만, 사장 선임권은 여전히 재단에 있습니다. 소유, 경영, 편집이라는 삼각 체제는 한때 잘 작동하

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학자들조차 높이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 선임권은 신문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유가 경영을 장악하고, 경영이 편집을 압박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빚어진 거죠.

‘소중한 지면에 내부 문제를 담아도 되느냐’는 항의에 대한 답은 미국 뉴욕타임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기사 내용을 조작했다가 들통 나자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자사의 발행인과 사주는 물론 편집국 간부를 취재해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비판의 칼날을 자신과 자신들의 상사에게 겨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뉴욕타임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독자에게 내부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비판대에 세우는 과감함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금의 부산일보 사태도 2003년의 뉴욕타임스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집권이 소유주와 경영진에 의해 잠식당하는 상황을 자기고백하는 것은 부끄럽긴 하나 숨길 일은 아닙니다. 진정 부끄러운 건 사주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부 거대신문의 행태가 아닐까요.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들리는 것은 독자께서 구독하시는 신문이 제법 건강한 신문이기 때문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치부를 드러내는 부산일보의 자기고백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산일보 :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여야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수장학회를 내려놓아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미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 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위원장과 관련한 ‘정수장학회 의혹’에 대해 “대권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털고 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박 위원장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과거에 사실은 강탈한 재산이 아니냐. 그걸 왜 집착하느냐”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주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이미지하고 정반대 대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도 4일 MBC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혹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박 위원장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렇다면 정수장학회 같은 것 말이나”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비슷한 취지

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이어 “여기저기서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하니까 국민 의혹이 많다”면서 “유죄나 무죄냐를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하나이니까, 대선 전략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했고, 박 위원장이 지금도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치무대에선 박 위원장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이 같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대비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일보 :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때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내 용 :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산 국회의원들의 반 이상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법으로는 MBC 방송문화진흥회같이 이사진을 투명하게 구성하거나 부산시민 또는 제3의 단체(공익)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6일 본보가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정수장학회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묻는 설문을 통해 나왔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13명이 응답했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먼저 박 위원장이 장학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 13명 중 8명에 달했다.

A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최필립 장학회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박 위원장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C의원은 “부산일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장학회 이사장을 박 위원장이 임명한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 F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의 정치 사유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장학회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인 의원들은 “부산일보 사태는 노조와 장학회 사이 갈등이다. 박 위원장을 끌어들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 “박 위원장은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손을 뗄 것이 있겠느냐”는 등으로 반대논리를 폈다.

정수장학회의 향후 처리 등 해법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경우 대선주자인 박 위원장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A의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자진사퇴해서 박 위원장의 집을 털어줘야 한다. 이후 장학회는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법은 뻔한데, 왜 이사장이 고 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박 위원장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장학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 MBC의 방송문화진흥회같이 이사진 구성을 여당 6명, 야당 3 명으로 투명하게 꾸려가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 이사장의 과잉충성 형태로 인해 빚어진 문제다. 이로 인해 박근혜 비대위 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외에 “공익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최초 소유주인 김지태 씨 유족에게 돌려줘야”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이○○ 노조위원장은 “이미 과거사 진실위로부터 1962년 김지태 씨로부터 강 탈한 재산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장학회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냐”면서 “여권의 총선을 책임지고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14)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8일 낮 12시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앞. 새벽부터 전세 버스를 타고 올라온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조합원과 가족 30여 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지역 지·본부 노조간부와 가족 20여 명도 함께 모였다.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상식을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0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오랜 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에게 자리만 넘겨놓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낮부끄러운 행위”라며 “타조가 천적을 만나 도망가다가 급하면 모래밭에 머리만 파묻고 숨는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변명은 타조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지부 이○○ 위원장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위한 한국 언론사 최초의 파업 승리에 이어 지금 부산일보는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전국 최대의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가 편집권 독립을 지켜 더욱 건강한 언론이 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지부 조합원들은 9일부터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 경향신문 지부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

은 바로 정수장학회다. 사회에 제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한겨레신문 지부장도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오후 1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이어진 2차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시민들의 박수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한편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 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해온 한나라당 이준석 비대위원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의혹해명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수장학회 의혹해소에 대해 “대선주자로서 선결과제” “의혹해소 돼야 대선투표 가능” 등에 이은 발언으로, 박 위원장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다.

이 위원은 정수장학회 해법에 대해 “장학회는 개인이 사유할 수 없는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즉 이사회 인선이나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정수장학회 측이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15)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내 용 : “잘못된 것이 있어야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2004년 7월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유신논쟁’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탈 유산’인 정수장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라며 박 비대위원장을 압박했다.

정수장학회 8대 이사장인 박 비대위원장은 1995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1999년, 2003년 두 차례 연임되면서 2007년 5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정수장학회는 헌납된 것이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던 박 비대위원장은 다음 해 2월 28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비대위원장은 “예전에는 단지 그때 사퇴할 경우 마치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안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 사퇴한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잘못이 없다면서도 자진 사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과 한나라당 비주류 측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사장직 자진 사퇴’로 돌파해나가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한 걸음 비켜서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박 위원장이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재산 축적과정에 문제가 있는 정수장학회의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수장학회에 대한 용단을 요구받을 때마다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장하는 공익재단이고, 나는 이사장직도 내놨는데 내가 뭘 더 어찌란 말이나?”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비대위원장의 정수장학회와의 절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재단의 막후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필립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부산일보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맡게 됐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후임 이사장을 직접 지명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사장직을 떠난 신분이어서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환원을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제라도 사회환원이 옳다’는 입장 표명만이라도 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으나 박 비대위원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일보 : (16) 『**불투명한 이사장 ·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내 용 : “이미 사회에 환원한 공익재단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무슨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 한마디 말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장학회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전히 장학회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의사결정은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사유화 한 이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수혜자들은 친목회를 통해 박 위원장의 탄탄한 지지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평까지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끊을 수 없는 인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장학회 강탈 논란에 휩싸이자 정수장학회 이사장 직을 내던졌다. 그 자리는 최필립(84) 씨가 이어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인 최 이사장은 바레인 대사 등을 거친 외교통이였고, (주)○○농수산 회장의 신분이었다. 그는 박근혜 위원장이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최 이사장은 이후 신○○(70) 최○○(74) 씨를 2005년 5월과 10월 이사로 영입했다. 신 이사는 주필리핀 대사와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지냈고, 최 이사는 지난 2002년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 이들은 모두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외교관 출신인 최필립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직속 후배이다. 이로써 최 이사장은 자신까지 등기 이사 5명의 과반이 넘는 3명의 이사를 확보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거리낌이 없게 됐다. 나머지 이사는 1999년과 2000년 취임한 송○○(59) 전 서울교대 총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71) 전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이다.

공익재단이면서도 설립자의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된 데는 불투명한 선임 구조도 한몫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는 사실상 형식 절차일 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의 자격으로 추천된 최 이사장의 의사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공익재단의 형태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셈이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이○○ 위원장은 “최 이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가족까지 총동원한 정치후원

최필립 이사장은 자신의 가족까지 총동원해 박근혜 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개인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각각 냈고, 2008년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500만 원씩을 후원해 최 이사장 가족이 공식적으로 낸 후원금만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이사장은 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장학금이 꼬박꼬박 이사장의 연봉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 대체로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이사장의 개인 프라이버시라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이사장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월급 1천100만 원과 함께 승용차와 기사를 장학회로부터 제공받았다. 한때 섭외비를 포함한 연봉이 2억 5천만 원에 달했고, 2000년 이전에 섭외비 명목의 돈을 받고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근혜 위원장 측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수장학회 관련 조사 결과 등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다른 장학회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며 “이사장과 직원들의 임금은 이자 소득과 부동산 이익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일보 : (17)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내 용 : 정수장학회를 이끌어 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박정희 사람들’로 구축한 친정 체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5·16 장학회의 초대 이사장은 이○○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었다.

또 부일장학회를 빼앗는 데 개입했던 고○○ 법무부 장관을 상임이사로 앉혔고, 김○○ 삼양사 회장과 이○○ 삼성물산 회장 등 기업인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 7명이 초대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어 엄○○ 최고회의 의장 고문, 문화방송 이사이자 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최○○ 씨 등 최측근들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정수장학회 이사를 거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부터 8년간 5대 이사장을 맡은 조○○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이자 박근혜 위원장의 이모부였다.

그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부산일보 회장을 지냈다. 이후에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고문이 이사장을 맡았다.

1995년부터 10년간 역임한 8대 이사장은 8년간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다. 사실상 2세 세습이 이뤄진 것이다.

정수장학회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장학회 임원과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사장 등의 요직을 두루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1988년부터 10년간 이사와 상임이사로 일한 손○○ 씨는 오랫동안 영남학원 이사와 육영재단 이사로도 겸임했다.

중앙정보부장 이○○ 씨도 1966년부터 8년간 장학회 이사였다. 역대 이사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총무비서관, 문화방송 부산일보 사장, 영남학원 또는 육영재단 이사 등을 지낸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친구들이 장학회 안팎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부산일보에서 일하면서 1966년부터 8년간 장학회 이사를 맡은 황○○, 1965년부터 20년간 부산문화방송 사장 등을 맡은 조○○, 왕○○ 부산일보 전 사장(1973~1980) 등이 그런 인물이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사장 자리는 박○○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의장(1963~1964), 최○○ 공보부 차관·국회의원(1964~1971), 왕○○, 대구사범 출신인 김○○(1997~2006) 씨와 같은 측근들이 차지했다.

부산일보 : (18)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내 용 : 증권기자 K 씨는 부산일보가 1988년 5일간의 파업을 통해 편집권 독립 장치 방안을 쟁취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입사했다. 하지만 견습이 갓 지날 적 겪었던 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당시 박정희 군부 쿠데타와 관련한 기사를 쓰고 난 뒤 담당 데스크로부터 질책을 당했기 때문이다. ‘5·16 혁명’을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을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으로 쓴 대목이

문제였다. 데스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용어만 좀 빼자”고 했다. 은근하고 강한 톤이었다.

■ 부산일보 소유 문제는 불완전하다

부산일보는 신문재벌이나 기업재벌의 소유가 아닌 비영리 단체인 공익 장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소유 형태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 교수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유주(정수장학회)가 소유권을 행사하려 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정희 정권의 직할 통치를 받던 1970년대와 신군부가 등장한 1980년대, 부산일보는 ‘숙명적 여당지’로 존재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79년 12·12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 했다.

1980년 11월 14일 이루어진 언론통폐합은 한국 언론 암흑기의 시작이었다. 정권의 강요에 의해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스스로 채택한 언론사들은 자정을 결의했다. 결국 보안사령부에 의해 강제 재편성된 언론사는 서울 종합지 6개, 경제지 2개, 영자지 2개, 지방지 10개, 통신과 방송은 각각 1개사와 2개사였다.

부산일보는 ‘1도 1사’로 살아남았다. 부산일보가 폐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유주가 정수장학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사회 민주화 바람을 업고 언론자유화 조치가 내려지자 부산일보 기자들은 여당을 대변하던 논조를 버리고 양심의 북대를 쥐게 된다. 언론사 최초 1988년 5일간의 파업과 승리였다. 기자들이 편집국장 선출에 참여하는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따냈다.

■ 부산일보가 박근혜 신문이라고?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박근혜 의원이 2004년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서 부산일보와의 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었던 시절 박근혜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부산일보의 논조가 오해를 살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되면서 부산일보의 야당 대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정치권과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게 된다.

부산일보가 단순히 장학재단이 소유한 신문이 아닌, 유력 정치인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문으로 위상이 바뀐 것이다.

특히 정수장학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의 단순한 ‘수익기관’에 불과하다. 부산일보가 언론사로서의 자기 역할과 공공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소유권을 가진 장학회에 기금을 내면 되는 식으로 관계가 정립돼 있다. 부일장학회 강탈 문제를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일보를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2004년 박 대표나 정수장학회의 노골적인 편집권 간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면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

‘비운의 대통령 딸’이나 ‘첫 부녀 당수’ 같은 사실에 기반 한 용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편들기로 비쳐졌다. ‘박다르크(박근혜+잔다르크)’나 ‘홍탄에 쓰러진 어머니를 대신해 22세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 언론 감시 시민단체는 ‘동정심을 유발한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조는 “박근혜 이사장이 정치를 계속 하려면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2005년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결국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비서관이었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에 앉히고 물러난다.

■ 소유문제 개선이 편집권 독립의 핵심

지난해 말 부산일보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된다. 이른바 사측에 의한 신문발행 중지 사태이다. 2011년 11월 30일자 부산일보는 한국 언론역사상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편집권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에 구성원(부산일보 사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노조의 오래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판단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노동조합은 사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수장학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보도했던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징계 남발 상황을 보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측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견해만 실었다”며 아예 윤전기를 세워 버렸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유주(정수장학회)가 소유권을 행사하려 들면 견장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산일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장 임면권을 행사하는 정수장학회의 민주화와 부산일보와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조건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부산일보 : (19)『**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내 용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외곽 조직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상청회’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모임은, 정수장학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장학생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현재 학계 관계 법조계 재계 등에 두루 포진해 있다. 언론에서는 주요 시기마다 이들을 박 비대위원장의 우군 세력으로 분류, 소개한다. 이른바 ‘박근혜 인맥’이란 애기다.

그러나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수혜자들이 외부의 눈에 특정 정치인의 지지 세력으로 비쳐진다는 것

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냥 친목회” vs “조직된 우군”

정수장학회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모임으로 청오회,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상청회를 두고 있다. 개인의 가입 의사와 상관 없이 장학금을 받는 동안은 청오회원, 졸업한 뒤에는 상청회원이 된다.

이러한 자동 가입 시스템에 대해 상청회 측은 “그냥 동문 모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대학 동문회 소속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400여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오회의 경우 중앙에 임원단을 두고, 전국에 10개 지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각 지회에도 회장, 부회장 등 임원단을 따로 두고 있다. 게다가 상청회 소속 선배들은 지도교수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 대학생들을 관리한다.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장학생 모임을 조직하고 관리할까. 그렇지 않다. 대학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측은 “장학생 모임도 없고 따로 행사를 마련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학기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동송천재단 관계자도 “공식적인 모임도 없고 조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오회원들은 이와 달리 정수가족 한마당, 전국 하계 수련회, 지회별 단합대회 등 행사를 통해 남다른 유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2학년 때 정수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3년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한 부산지역 대학생은 “1년에 한두 차례 생가 방문을 한다”며 “참석 여부는 자유라서 나도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 정계 · 학계 등 광범위한 인맥

일부에서는 대규모로 조직돼 있는 이 같은 모임이 박 비대위원장의 대선 조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79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정수장학금을 지원받았던 부산지역의 한 공기업 직원은 “공고 재학시절 반에서 1등을 해 장학금을 받았지만 청오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는 않았다. 대학생들 위주로 엘리트 계급이 형성된다는 느낌, 자기들끼리 사회 세력으로 뭉친다는 느낌이 들어 소외감을 느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 박근혜 친위 세력인 양 서로 뭉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의 경우 실제 대단한 인맥을 자랑한다. 우선 정계 인물로는 김기춘 현경대 강성구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있다. 법조계

인사도 많다. 대표적 인물이 신○○ 전 검찰총장, 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다. 장학생 출신 졸업생들답게 학계 인맥도 상당하다. 회원 중 대학 교수만 3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한 상청회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와의 인연을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적인 후원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기업인 출신인 상청회 김○○ 회장은 매년 500만 원씩 박 비대위원장에게 후원금을 내는 고액 기부자다.

그러나 상청회, 청오회원들은 대부분 “우리 모임은 친목을 위한 동문 조직”이라며 정치색을 띤 집단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상청회 부산지부 총무와 청오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동아대 이○○(전기공학과) 교수는 “상청회, 청오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을 당시 행사장에서 만나 기도 해서 인간적인 친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회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 반, 아닌 사람 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일보 :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내 용 : 공권력에 의한 강탈 논란과 함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렴정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송○○ 신부와 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전 동아대 총장 등 부산지역 민주 원로 인사 23명은 정수재단의 원상회복과 부산일보의 정상화를 위해 박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부산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6일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 원로들이 뜻을 모은 지 40일이 지났다”며 “오늘 이렇게 원로들이 다시 모인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 된 정수재단 사회 환원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인사들은 “박 위원장이 진정 한나라당의 쇄신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안고 있는 구악부터 털고 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로서 정수재단의 실질적 환원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해 전국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려진다. 백○○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 진보연대 대표, 한○○ 성공회대 교수, 김○○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재야 및 노동·진보계 인사들은 전국언론노조와 공동으로 ‘(가칭)독재유산 정수재단 사회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당 쇄신을 부르짖는 것은 위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박근혜-정수재단-부산일보’로 이어지는 관계는 부산일보의 공정성에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박 위원장이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2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내 용 : 직원들의 월급명세서가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임금 수준은 월 100만 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비영리 공익재단의 이야기다. 직업이 대학 교수인 이 재단의 이사는 직원들의 명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다. “공익재단의 직원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더 줘야 한다’, ‘못 받겠다’는 승강이 끝에 올해는 월급을 10만 원만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 월급 110만 원, 연봉이 1천320만 원이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이사장 한 사람의 월급만 1천400만 원을 넘는다.

■ 비영리 공익재단

비영리 공익재단 정수장학회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권력이 강탈한 개인 자산을 국가가 아닌 특정 세력의 소유물로 바꿔 장학회를 출범시켰고, 장장 50년간 장학회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사실이다.

재단이 이미 사회에 환원되었다면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개인 재산의 기부(공익재단 설립)가 오히려 재산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재산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 하려면 미국의 대부호 워런 버핏처럼 해야 한다. 경제 매거진 ‘에콘 브레인’ 유○○ 편집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들은 개인 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기부 기구인 기빙 플레지를 통해 기부 서약을 한다”며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각종 부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형식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내놓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우리 기부 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투명성이 생명

각종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을 만들어 자신의 돈을 사회에 기

부한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명목상 사회 환원이지만, 또 다른 형태로 사유 재산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알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매년 관할 관청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명백한 회계 부정이 아닌 이상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로 친숙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난 2010년 종합감사 결과 3년간 182회에 걸쳐 업무와 상관없는 항목의 비용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소모했고, 경기모금회의 총무회계 팀장은 4년에 걸쳐 9천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려 지탄을 받았다.

정수장학회도 순환 보직이나 전보 발령도 없는 내부 통제 제도, 인맥 중심의 폐쇄적인 특성 등 비영리 법인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단체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구성된 외부 감사를 진행해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한 편법 상속,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공금 유용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있다. 바로 공익법인 공시제도다.

정수장학회의 총자산가액은 257억 5천만 원인데 그중 금융자산만 202억 원이다. 부산일보에 2010년 한 해 12억 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다. 그런데 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의 관리비로만 연간 10억 원이 쓰인다. 관리비의 대부분은 이사장 등 임직원의 급여로 추정된다. 공시된 자료에 직원 급여 항목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일반인들은 장학회 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서울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필립 이사장의 세전 연봉만 1억 7천429만 원에 달한다.

■ 공익이사제를 허하라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 재단’은 이사 추천 과정부터 투명하게 진행된다. 모금을 통한 배분이 주목적인 이 단체는 이사진을 구성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모금 능력과 사업 관계의 중립성도 중요한 항목의 하나다.

아름다운 재단 이사인 한양대 경영학부 예○○ 교수는 “비영리 재단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업군이나 회계 전문가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수익을 내는 기업도 아닌데 이사장이 역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사 선출도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게 돼 있지만, 재산 출연자와의 특수 관계자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진의 추천에 의해 다른 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그런데 주로 인맥에 의한 선거와 임명이 이뤄지는 게 문제다. 최필립 이사장 취임 이후 새로 추천된 2명의 이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외교관 출신이다. 최 이사장은 전 리비아 대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김○○ 교수는 “공익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이사회인데 공익 이사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기존 이사진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가 파견되도록 법이 마련된 만큼 공익법인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내 용 : 군사 정권의 유산인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범국민적 운동이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지역 53개 시민단체와 언론 노동 학계, 야3당은 17일 ‘정수재단반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번 시민연대 발족은 그동안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온 정수재단 환원과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정수재단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역 민주 원로 인사 23명도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1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발족 기념 토론회를 갖고 정수재단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두 발언에 나선 송○○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위원장은 “정수재단 사회 환원은 권력에 의해 강탈된 재산의 반환이라는 의미”라며 “나아가 권력에 의해 장악된 언론의 독립을 되찾고 유신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외대 이○○(역사학과) 교수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유 재산을 강탈하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공익 재단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강탈이나 부정축재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경 유착이나 인권 유린 등도 상당 수준 용인될 수 있다는 경제 지상주의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영산대 이○○(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법적 형식이나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강탈 재산의 사회 환원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라는 부산일보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요구에 주목해 정수재단이 사회적 공익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 진보연대 대표 등 전국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문제를 사회 의제화해 해결책을 토론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 특별법 제정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부산일보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지원 △1인 시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내 용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이사진 교체 주장에 대해 “사회에 이미 환원했고 저랑은 이제 관계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사회에 환원했는데 뭘 더 환원하라는 것이냐.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에 이사진이 주인 역할을 한다”며 모든 권한은 장학회 이사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후 그 재산을 기본으로 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현재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 경향신문 건물 땅을 소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대해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알아보니 편집국장을 노조가 뽑는데 그러면 편집권이 100% 독립돼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또 부산일보 노조의 경영진 선임권 요구에 대해서도 “장학회 이사진과 부산일보 관계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장학회와 무관한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냐. 이슈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필요한지 몰라도 억지고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 소명됐기 때문에 접었다”면서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온다. 모든 것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위원장의 동어 반복식 해명에 대해 유력 대권 후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탈 유산’인 정수장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압박에 “잘못된 것이 없다”며 버티다 이듬해 이사장직 자진 사퇴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후임 최필립 이사장 지명 논란 등 박 위원장이 여전히 재단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사장 직분을 내놔서 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지시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이 옳다’는 입장 표명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으나 박 위원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정수재단반환시민연대 박○○ 집행위원장은 “부산일보 사원들의 사장 후보추천제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현 재단 이사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있다”며

“편집권 침해와 독단 운영으로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현 상황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비켜가는 것은 유력 대권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도 이제는 박 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접고,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누가 봐도 정수장학회에 관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믿겠느냐. 본인이 대선에 나가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입장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일보 : (24)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내 용 :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데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가 노골적으로 박 위원장과 장학회 편을 들고 나섰다.

친박계 핵심인 서병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는 한 팔로어의 주장에 “웁습니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법인”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과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론하는 것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사실과 관계없이 단순반복함으로서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박 위원장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0년 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에선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오르며 박 위원장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계파내 신망이 두텁다.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입장을 자제해왔는데, 그의 발언이후 친박계의 장학회 편들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사장선임 · 편집권 관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확산 양상이어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은 몰라도 여당 의원들마저도 정수장학회 바로세우기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것은 그 자체가 오버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같은 친박계의 입장은 지난 6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보의 정수장학회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박 위원장과 정수장학회는 무관하다”며 박 위원장의 손을 들었다.

친박계 의원들은 “부산일보 사태는 노조와 장학회 사이 갈등”, “박 위원장은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는 달리 답변에 응한 ‘친이(친 이명박)계’ 성향의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손을 떼라”, “정수장학

회 이사진을 공정하게 교체하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부산일보 :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내 용 : 파업 중인 MBC 취재기자와 방송기자가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인터넷에 뒀다.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해 파업 중인 MBC 기자들이 그동안 잊선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되지 못한 취재 아이템을 ‘제대로 뉴스데스크’라는 이름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제대로 뉴스데스크’ 1회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사례 △부산일보 사태 해결의지 없는 박근혜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과 검찰 조사 상황 △영터리 MB 예산, 현장을 가다 △파업 후 김○○ 사장 잠행 행보 등을 다루고 있다.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사례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와 김문수 경기지사 인사 조치 뉴스를 외면한 MBC 뉴스를 타사 뉴스와 비교하며 자기비판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뉴스는 이 대통령의 가계도를 따져가며 비리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일보 사태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 위원장’에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을 현장 취재했다. 박 위원장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언론을 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1년간 일선 MBC 기자들의 요청에도 보도 책임자들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현장 취재를 막아왔다”며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있는 그대로 방송하고 싶은 MBC 기자들의 의지 표현이다. 회사 장비를 쓸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매주 1회 이상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MBC 피디들이 만든 ‘파(워)업 피디수첩’도 공개된다. 여기서 ‘MB(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어떻게 이뤄졌나’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트위터에는 어제 하루만 2천 300여 건에 이르는 지지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정말 오랜만에 진짜 뉴스를 봤다” “이렇게 잘할 것을 진짜 왜 못했나” “눈물 난다” “제대로 된 피디수첩도 기대하겠다” 등의 반응이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산일보 1면 중앙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중 2012. 1. 16.자 제목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기사의 활자와 동일한 굵기와 크기로 전면에 걸쳐 보도하며, 부제목 및 본문 활자는 위 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 활

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편집권을 침해한 바 없고 박근혜씨와 무관

–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주장은 경영권 관련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론 –

2. 내 용 : (1) “편집권 독립은 오래 전부터의 편집국장 추천제로 국내 언론사 중 가장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본 신문은 2011. 12. 1.(“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 동일자 제2면(“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7.(“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라는 제목의 기사), 같은 날(“[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8.(“[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19.(“[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 2011. 12. 29.(“[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라는 제목의 칼럼), 2012. 1. 18.(“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였으며, 부산일보 사측에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함으로써 부산일보 편집권이 훼손될 처지에 있고, 이에 부산일보 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와 야5당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3인의 편집국장 후보 가운데 1명을 회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1988년에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래로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나 기타 외부의 눈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어 왔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으로 편집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혹시라도 경영진이 편집 방향을 문제삼아 임기를 단축시킬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나 부산일보 사측에서 기사의 편집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지금까지 본 신문이 자신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본 신문의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밝혀왔습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

으며, 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 등 부산일보 사측과 노조 측 사이의 내부분쟁 때문이지, 여기에 편집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는 경영권 문제로 요구사항이 될 수 없어 위법하고, 언론 역사상 실제 사례도 없어”

본 신문은 2011. 12. 19.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과 2012. 1. 12.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편집권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에 부산일보 사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노조의 오래된 주장이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판단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는데,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공정한 언론보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고 있으나,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곧 노조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권은 주주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고유한 권리로서 주주가 이를 주주 아닌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한 주장이고,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예를 보더라도 주주 아닌 자가 해당 언론사나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왔습니다.

(3)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어”

본 신문은 2011. 11. 18.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동일자 제2면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13.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5.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6.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9.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0.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적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1.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 이사 면면 살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3.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 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2. 10.(“‘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05년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부산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최필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수재단 이사장 자리에 직접 앉혔다는 의혹이 있고, 박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전히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장악하고 있어 이사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여전히 박근혜 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2005. 2. 28.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데, 당시 후임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회가 속개되었으며, 이후 2005. 3. 5. 속개된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최필립씨가 추천되었으나 다른 이사들이 최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약 1달에 걸쳐 최필립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5. 3. 24.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직접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 의결은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들은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거나 교육계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며 단순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생 쌓아온 경력에 흠이 될 만한 의사결정을 할 인사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4)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고 순수한 공익활동만을 하고 있어”

본 신문은 2011. 11. 18.(“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6.(“정수재단 사회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6.(“[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20.(“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25.(“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로만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관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학술 교육, 문화진흥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50여 년 동안 무려 37,751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그 동안 장학금 등으로 지

급된 금액만도 약 500억 원에 이르며, 특히 2011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625명에 이르고,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도 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90% 이상을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및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나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별, 사회적 지위, 출신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있고, 매년 예산서 및 결산서를 감독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시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있는 등 정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어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실제로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나 다른 외부인사 누구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며 위 기사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부산일보 2면 우측 상단에 3단 크기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2011. 12. 1.자 2면의 제목(“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과 같은 크기와 굵기로 하고, 중간제목(“편집권 독립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통해 확실히 보장” 외 3개)활자는 위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당한 징계 철회..)과 같은 크기와 굵기로 하며, 본문활자도 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2. 03. 06.

<별지>

1. 제 목 :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2. 본 문 : 부산일보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이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편집권 독립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통해 확실히 보장”

부산일보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3인의 편집국장 후보 가운데 1명을 회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1988년에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래로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나 기타 외부의 눈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어 왔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으로 편집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혹시라도 경영진이 편집 방향을 문제 삼아 임기를 단축시킬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사나 부산일보 사측에서 기사의 편집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지금까지 부산일보가 자신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본 신문의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산일보 사측과 노조측 사이의 내부문제 때문이지, 여기에 편집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는 경영권 침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가 공정한 언론보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고 있으나,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곧 노조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권은 주주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고유한 권리로써 주주가 이를 주주 아닌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한 주장이고,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예를 보더라도 주주 아닌 자가 해당 언론사나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위원장, 정수장학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2005.2. 28.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데, 당시 후임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회가 속개되었으며, 이후 2005. 3. 5. 속개된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최필립씨가 추천되었으나 다른 이사들이 최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약 1달에 걸쳐 최필립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5. 3. 24. 이사회 의결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직접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 의결은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들은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거나 교육계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며 단순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생 쌓아온 경력에 흠이 될 만한 의사결정을 할 인사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재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학술 교육, 문화진흥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50여 년 동안 무려 37,751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그 동안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만도 약 500억원에 이르며, 특히 2011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625명에 이르고,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도 28억원에 달합니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어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실제로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거나 다른 외부인사 누구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관

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4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피신청인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 단체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과 관련한 이북도민들의 정서를 확인한 뒤 이를 성명서로 대내외에 발표하기로 하고 자체 발간하는 이북도민연합신문과 동아일보에 관련 성명서를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단체가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인 자신의 성명을 누락시킨 채 위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해당 성명서의 취지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는 성명서이자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이북도민연합신문 :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내 용 :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정권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시키려는 중국정부의 반인도주의적인 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상황에서 탈북자 31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만약 북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복송되면 결국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종신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고향에서 본보기로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녘이 고향인 8백만 이북도민들은 탈북자들은 명백하게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목숨을 위협 받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난민임을 밝히며, 중국정부의 반인륜적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법을 무시한 반인도적인 처사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8백만 이북도민들은 북송 직전에 놓인 탈북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중국정부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을 막고, 중국과 신속히 협의해서 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31명의 탈북자들을 전원 구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

1. 유엔과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에 유엔난민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생존권이 걸린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1. 8백만 이북도민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북한에서 기아와 억압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밝히며, 탈북자들의 중국내 인권유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2. 2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 안 ○○(황해도민 회장)
-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장 박 ○○
- 함경남도 중앙도민회장 홍 ○○
- 함경북도 중앙도민회장 안 ○○
- 미수북경기도 중앙도민회장 최 ○○
- 미수강원도 중앙도민회장 장 ○○
-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북도민연합회가 자체 발간하고 있는 이북도민연합신문 1면 광고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광고의 제목 활자인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2012년 2월 15일자 성명서에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 ‘오○○’이 누락되어 바로 잡습니다

2. 내 용 : 이북도민연합회는 자체신문인 이북도민연합신문 2012년 2월 15일자 1면 하단(성명서)과 2012년 2월 20일 동아일보 A31면 광고란에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를 게재하면서 이북도민연합회 회원인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회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회원들로부터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오○○회장이 이북도민연합회 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가진 것으로 오해되어 오○○ 회장이 도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고, 평안북도 도민들이 회장 이름 누락이 동아일보 성명서에서도 잇달아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 항의가 잇달아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도민 및 오○○ 회장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2. 2. 15.자 이북도민연합신문 제1면 하단에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게재하였는 바, 위 성명서에 신청인 대표자 이름이 누락되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위 ‘언론보도등’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를 의미하며(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 ‘언론 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같은 조 제14호).

살피건대,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2012. 2. 15.자 이북도민연합신문 제1면 하단의 광고란에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성명서는 광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광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3. 05.



사례 5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2011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를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재임대하였으며, 이는 재직 중인 회장의 연임을 위해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재직 중인 회장의 연임을 위해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해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1) 『○○, 수상한부동산매각 '흑자꼼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면)

내 용 : ○○○(○○)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 20건을 자신이 주도한 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가의 용산사옥을 1018억 원에 파는 등 전국에서 모두 20건의 부동산을 ○○○○○제○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식회사(○○○○○)에 4703억 원에 매각했다. ○○○○○는 부동산투자펀드인 리츠를 설립해 자본금 2000억 원과 대출 2600억 원 등으로 이를 인수했다. ○○○는 리츠에 건물을 매각한 뒤 이를 다시 10년 동안 임대해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2958억 원의 수익을 올린 덕분에 4분기 28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교묘한 매각으로 적자를 흑자로 반전

시킨 셈이다.

○○○는 최근 장비 소형화 및 자동화로 유휴 부동산이 늘어나자 자회사 ○○○ 에스테이트와 ○○○ 에이엠시(AMC)를 세워 보유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이번에 매각한 부동산은 유휴 부동산이 아니라 용산사옥처럼 모두 현재 사용중인 업무용 알짜 자산이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으로 ○○○는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졌을 뿐 전에 안 내던 임대료를 물게 됐다.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닌데다 매각 상대가 제3자가 아닌 ○○○가 참여한 부동산신탁펀드라는 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기 위한 매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신이 만든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임대한 기업은 ○○○가 최초”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는 자본금 2000억 원으로, 보통주 15%를 ○○○가, 의결권 있는 우선주 85%를 베스타스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신한생명·삼성화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형식상 최대주주는 69% 지분을 보유한 베스타스2호지만 투자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인 데다 ○○○○○ 설립을 ○○○가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사실상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우선주는 높은 배당과 함께 의결권도 주어진 게 특징이다.

○○○는 부동산 매각 의혹에 대해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 자산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의 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고 ○○○ 지분은 15%에 불과해 자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는 또 “세일 앤 리스백으로 매각한 이유는 통신망 광대역화로 통신사업용 부동산 규모가 줄고 있는 데 따라 장비를 이전하기 전까지 현재 공간을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 (2)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기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5면)

내 용 : ○○○(○○)가 지난해 말 전국의 20개 지사와 전화국을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매각 뒤 임대라는 자산 유동화 방식은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동원하는 절박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의 주력인 통신사업은 초기 설비투자자와 가입자 확보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매달 현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자산 유동화에 나섰던 기업들과 형편은 다르다. ○○○ 쪽은 “유휴 부동산 매각에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팔리지 않게 된 상황에서 매각이 가능한 현재 사옥을 유동화시킨 것”이라며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자산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는 통신시장의 포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통신 이외의 사업에 진출하는 데 현금이 필요한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그룹 전체 매출에서 통신과 비통신 부문 비중을 5 대 5 정도로 만들 계획”이라며 “3년 동안 통신 부문의 매출을 강화해 경쟁력의 기초를 닦았다면 앞으로 2기에는 통신업계 1위 기업을 넘어 종합그룹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렌탈·위성방송·정보통신솔루션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2015년 40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비씨(BC)카드, 금호렌터카 인수 등이 그 시도의 하나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의 배경에는 매출이익을 키워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유지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 경영진은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는 2009년에도 순이익의 94%를 배당한 바 있다. 매각의 이유가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 현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승인받아야 하는 사정도 매출이익과 주가를 각별하게 관리해야 할 배경이다. ○○○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1조9573억 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4분기엔 2G 종료 비용과 주파수 전략 실패로 엘티이(LTE)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실적 악화를 지적하며 고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 유지가 어렵다고 ‘압박’ 해왔다. 조○○○○ ○인권센터 위원장은 “○○○는 경영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부동산을 팔아 실적을 만들어왔다”며 “특히 비통신 부문을 50%로 키우기 위해 현찰이 필요하고 줄어드는 이익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메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종합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고,

- 한겨레(<http://www.hani.co.kr>)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제일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 허위로 밝혀져, 2011년 4분기 실적 안정, 부동산 매각은 장기 투자전략 일환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 ‘수상한 부

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이라는 제목으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하고 다시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 부동산 매각은 2009년부터 마련된 자산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고비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내에서 결정되었는데,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및 이를 통한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하여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가 부동산을 매각한 ○○○○○○는 베스타스 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85%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원에 대한 선임 및 개임권을 행사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는 위 회사 주식의 15%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바, ○○가 ○○○○○○의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의 비율이 핵심 사업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롯데, SK, HSBC 등의 우량기업들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어 본 신문은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 부동산 매각은 장기 투자전략 일환, 2011년 4분기 실적도 안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이라는 제목으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하고 다시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는 2011년 4분기 실적 및 부동산 매각 배경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부동산 매각이익 2958억 원을 포함하여, 4분기 28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BC카드 등의 계열회사들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상 수치로서,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의 부동산 매각은 2009년부터 마련된 자산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고비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내에서 결정되었는바,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및 이를 통한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 부동산을 매각한 ○○○○○○는 베스타스 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85%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원의 선임 및 개입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는 ○○○○○○의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한편,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의 비율이 핵심 사업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롯데, SK, HSBC 등의 우량기업들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아래의 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용산사옥 등 20건, 지분 가

진 ○○○○○에 팔아과 같은 크기로 한다. 또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보도문을 동일기간 안에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2년 2월 16일자 1면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5면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 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에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매각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 기준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의 50%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키거나 부동산 매각이익을 배당에 활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는 “○○가 부동산을 매각한 부동산개발회사는 ○○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고, 세일 앤 리스백의 매각방식 또한 법령상 허용되고 널리 활용되는 것이므로, ○○의 부동산매각이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회장 연임 승인 등과 전혀 관계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3. 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①

한겨레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②

인터넷 한겨레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접수일 : 2012. 02. 29.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 총경이 지난 10월 고향 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자 파출소로 발령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권 총경은 수사 진척이 늦어 조언과 도움을 준 것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 녹취 (권○○ 총경/광주 ○○경찰서) : “(철거업체 대표가) 고향 후배고 하니까(담당 형사한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죄도 크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조언을 했어요.)”

▷ 리포트 : 주민들은 수사경찰의 인사조치에 대해 경찰이 비리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보름 넘게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가재울 4구역 주민) : “계속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셨던 분이 계속 진행을 해야지 이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정확히 밝혀질 수 있잖아요.”

▷ 리포트 :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은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 뉴타운 비리와 관련해 현직 총경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경찰총경 비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 22.(9시뉴스)에서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총경 등이 지난해 10월 고향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하고 최경위의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보도내용은 최경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며, 최경위에 대한 인사는 본인의 문제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인사조치가 되었으며 서대문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권모 총경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사조치 및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경찰총경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 22.(9시뉴스)에서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 고향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하고 최경위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권모 총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경찰 수사 결과, 본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 후속보도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3. 08.



사례 7

대전 지역 일부 경찰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대전조정2, 2012대전조정3(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피신청인 : 조 ○ ○ (대전시티저널 발행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2. 03. 1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전 지역 일부 경찰관이 지역내 불법 오락실에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금품을 상납받는 등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법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보도로써 대전 지역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시티저널 : (1)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내 용 : 대전 경찰이 지역 내 불법 오락실과 뿌리 깊은 상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전 경찰 가운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10여 원을 상납 받은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 A 씨는 “경찰 조직이 굶을 대로 굶었다. 경찰이 떳떳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불법 오락실의 상납 관계는 대전지방경찰청부터 시작해서 일선 지구대까지 뻗어 있다. 불법 오락실과 유착된 경찰이 이들로 부터 매달 상납 받는 돈만 수 천만원 선이다”라고 주장해 상상을 초월하는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A 씨는 또 “<시티저널>의 보도로 인해 일부 불법 오락실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3월 중순부터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단속되고 있는 불법 오락실은 대부분 영세 오락실이다. 조직폭력배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오락실은 아무런 영향없이 영업을 하

고 있거나, 잠시 문을 닫아 놓은 상태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락실 B 업주는 “깡패들이 관리하는 불법 오락실은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문을 닫아 놓았거나, 섭외된 경찰을 믿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힘 없는 오락실만 단속하고 있다. 지역 조직폭력배의 경찰과 유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해 A 씨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B 씨는 이어 “경찰을 섭외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준비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렵도 없다는 경찰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섭외비로 3,000만 원을 준비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오락실 매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납 장부 같은 건 애초에 만들지도 않는 것이 업계 룰이다”라고 경찰과 불법 오락실 상납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경찰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감찰 중이지만 누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연관이 있다면 직무고발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겠다. 밝혀낼 수 있는 데까지 밝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정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티저널 : (2)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내 용 : 대전 경찰 소속 일부 경찰관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이어 대전 경찰 지휘부만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불법 오락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경찰 실명과 함께 소속 · 직위가 모두 알려져,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에서 관할 지구대 팀당 1명씩 섭외하는 것이 업계 불문율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 대전청 근무 경찰 순으로 섭외하게 된다. 내부에서 모르는 경찰관이 없다. 유착이 없다면 거짓말이다”라고 경찰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들은 “<시티저널> 보도 이후 대전청 청문과 감찰에서 몇몇 경찰관을 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좌 · 통화내역 조회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자신의 계좌와 핸드폰을 사용하겠냐”고 내사 자체에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지금 잠 못 자는 경찰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냉소를 보내며 “청문과 감찰이 제 역할만 한다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텐데, 내사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만 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자체적으로 속아내지 못하면 검찰에 맡기는 게 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들은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이 인사까지 개입한다고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관 A 씨는 “불법 오락실에 섭외된 B 경찰관이 내년 자신이 가야할 자리를 보고 있고,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 로비를 했다고 한다. 섭외 경찰관들이

일명 ‘퍼즐 맞추기’로 서로를 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 C 씨는 “섭외 경찰이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지구대에 있는 D 경찰관이 청으로 가기 위해 작업 중이다. 섭외 경찰들은 서로를 옆에 두고 있거나 두려고 하는 상태다”라고 인사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창설한 ‘허리케인 팀’에는 비난이 뒤따랐다.

또 다른 경찰관 F 씨는 “백날 해봐야 안 된다. 보여 주기식 밖에 더 되겠냐. 불법 오락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적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하겠다고 의경·기동대·광수대 고생할 이유가 없다. 광수대 직원이 오락실이나 단속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허리케인 팀의 역할에 꼬리표를 달았다.

이들 경찰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다시 새판을 짜기 위해 모두 바뀌어야 한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휘부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물타기’에 나선 것 같다. 이래서야 대전 경찰이 바로 서기 힘들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은 사실이 아님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경찰관과 업소의 유착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법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이고 일방적인 보도로, 대전경찰과 오락실 업자

간 유착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전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보도였습니다.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전경찰청의 상설단속반과 동부서와 둔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오락실을 뿌리 뽑고” 있으며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은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 목 :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님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7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데 지휘부만 모르고 있고 불법 오락실과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 실명과 함께 소속·직위가 모두 알려져 파장이 더 확산 될 것이며 복수의 경찰 A,B,C,D,F를 거론하여 인사로비 의혹 등 경찰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였으나 대전경찰 지휘부에서는 지방청에 “허리케인 팀” 동부·둔산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오락실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오락실 유착 경찰의 실명이나 소속·직위가 알려진 사실이 없고 경찰의 인사 시스템을 모르는 불법 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이고 일방적인 보도로, 대전경찰과 오락실 업자간 유착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전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보도였습니다.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전경찰청 허리케인 팀과 동부서와 둔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강력한 단속 활동 및 투명성과 유착의혹을 단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찰기동대 게임장 배치로 “불법 오락실을 뿌리 뽑고” 있으며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2월 24일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및 3월 7일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지역 일부 경찰관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은 단속정보 제공이나 섭외비, 금품 상납 등과 같은 불법 오락실과 경찰관의 유착관계는 불법 오락실 업주 등의 주장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유출 및 유착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추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힘 없는 오락실만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오락실은 모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오락실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야간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대전시티저널> 홈페이지(<http://www.gocj.net>)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한다. 피신청인은 또한,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3월 22일 09:00까지 3일간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임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3.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대전시티저널 :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8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대주주 협박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소액주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350·351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3.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업체가 상장폐지된 이후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구 경영진 간의 법적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 헤럴드경제(2012서울조정352·353)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헤럴드경제 :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13면)

내 용 :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 이○○(54) 씨가 지난 9일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이하 ○○○○○○)의 법정관리인 신분인데, 과거 소액주주 40명이 이 씨와 공동관리인인 이○○ 씨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이다.

소액주주 대표인 최○○ 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 조작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 명의 무고한 소

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증권 지점장과 국제영업부장을 거친 금융인 출신이다.

녹색주로 각광받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 육박했던 ○○○○○은 2010년 우회상장 2년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100억 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투자자들과 이 전 대표 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이 전 대표는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은 현재 채권자인 삼보산업의 신청에 의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헤럴드경제 경제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경제면에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이라는 제목 하에 소제목으로 “○○○○○○ 법정관리인 소액주주 수백억 포탈 주장”이라는 소제목으로

1) 소액주주 대표인 최○○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 합병(M&A)등 조작 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명의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 씨는 이러한 제보사실을 부인하였고, 사실확인 결과 이○○ 부친인 이○○씨는 해당 회사가 보전처분이 내려진 2011년 11월 2일자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상기의 구 경영진간의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관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또한 금번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혀 왔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헤럴드경제는 지난 3월 16일 경제면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목의 기사에서 소액주주 대표인 최○○ 씨의 발언을 인용해 ○○○○○○○○의 법정관리인인 이○○ 씨가 주가조작과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인 이○○ 씨는 상장폐지 이후인 2010년 11월 3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구 경영진 간 법적 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씨는 보도에서 언급된 고소·고발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근거없는 악성비난이나 음해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히며, 제보자인 최○○ 씨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제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헤럴드 경제> 13면에 제1항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인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4월 23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

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4.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19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9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메신저피싱’에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556, 2012서울조정557(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의 보안이 ‘메신저 피싱’에 뚫렸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모바일 메신저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자사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뚫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 허위보도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가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들은 후속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중앙일보 : (1)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면)

내 용 : 가입자 4,200만 명(12일 기준)을 넘어선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앱인 ‘○○○○’의 보안이 ‘메신저 피싱’에 뚫렸다. 지금까지 ○○○○은 암호화 방식으로 운영돼 보안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1일 경찰과 인터넷 보안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영업을 하는 장모(52)씨가 “○○○ ○ 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움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장씨는 지난 3일 중국으로 출장 간 친구 주모씨로부터 ○○○○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 ○으로 대화를 하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 모두 그대로였다. 주씨는 장씨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너뿐 이라 급히 연락한다”며 “아내한테 비자금을 들킨 것 같다. 아내한테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 확인시키고 돌려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에 돈 거래를 하던 사이였고, 친구 이름으로 온 메시지라 장씨는 다른 사람일 거라 의심하지 못한 채 ‘비자금 계좌’라며 알려준 곳으로 600만 원을 보냈다. 장씨는 “두 시간 후 휴대전화를 보니 대화를 나눈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다시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기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송금한 지 10분 만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뒤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PC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 피싱 외에 스마트폰 버전만 있는 ‘○○○○ 피싱’ 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사고점검팀장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해킹기술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원격 피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악성코드 검사를 꼭 하고 백신을 다운로드받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8면)

내 용 : 진화하는 해킹에 ○○○○(○○)도 더 이상 ‘피싱 예외지대’는 아니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에 대한 피싱은 시간문제였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파악하는 ‘스마트폰 원격 해킹’ 기술이 개발됐다. 한 온라인 보안업체 관계자는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 등에 올려 놓은 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스마트폰 보안 백신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은 사용자가 수천만 명인 만큼 피해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PC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은 PC 해킹을 통한 것으로, 이미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일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앱 ‘○○○○’에서 친구 행세를 한 사람에게 180만 원을 보냈던 정모(33)씨의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한 ○○은 ○○○○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해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해킹 원인에 대해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사고 점검팀장은 “‘사회공학적 해킹’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자체를 공략하기보다는 ○○ 이용자의 학연·지연 등을 이용해 허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황 팀장은 “○○은 이름과 사진을 바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만든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뒤 ‘친구추천’에 뜨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격하고 싶은 사람의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는 소위 ‘신상털기’ 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3일 ○○ 피싱 피해를 당한 장모(52)씨는 “말투와 사진·이름이 모두 친구와 똑같았다”며 “이름을 부른 뒤 ‘친구야’라고 덧붙이는 말투도 비슷해 친구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전에도 400만~500만 원씩 여러 번 돈을 주고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가 이 돈을 받

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친구 주씨 모두 스마트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 측은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원격 해킹’에 ○○○○이 뚫릴 가능성은 없어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 홍보팀장은 “○○○○의 경우 인증체계가 휴대전화 번호와 이에 따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이를 원격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 피싱 해커에 대한 추적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업체들이 급증하는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이용자 접속기록을 일주일치만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 접수 후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데만 일주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②

온라인 중앙일보 : (1) 『“○○ 뚫렸다” 600만 원 보낸 후 전화기 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 - (1)의 보도내용 참조>

온라인 중앙일보 :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 - (2)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중앙일보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면 조정대상 기사 제목 활자의 절반 크기로 하고 본문은 1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joongang.joinmsn.com>)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기사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아래의 정정보도문도 함께 검색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3월 22일자 1면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18면

“악성코드 심은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원 사기 건이 ○○○○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보안은 뚫린 적이 없으며, 3월 22일자로 보도한 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고 ○○○○이 ‘메신저 피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

중앙일보 :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3월 처음 발생했던 ‘○○○○’을 이용한 송금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월 스마트폰 메신저앱인 ○○○○에서 장모(52)씨의 친구를 사칭해 6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특정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22일 “돈이 인출된 은행 주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피의자가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한 후 돈을 받아 달아난 사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통신조회·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통장 개설자가 이모(35·여)씨인 사실을 확인,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또 대포폰 개설자를 추적하고 은행 ATM기 CCTV를 통해 2명 이상이 가담한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발신지 조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칭한 친구가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수법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 보안이 뚫리거나 메신저 피싱에 노출된 사안이 아니다”며 “보안시스템과 관련 없는 단순 사칭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②

온라인 중앙일보 :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내 용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의 보도내용 참조>

사례 10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691·692, 2012서울조정693·69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1. (주)제이티비씨,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07.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식당이 언론에서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여행사 및 관광가이드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자극적인 화면을 사용한 과장·왜곡보도로서 사실이 아니고, 보도로 인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jtbc에 게재된 VOD 영상 및 향후 재방송 영상에서 신청인 식당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며, 신청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jtbc: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9일자 23:10)

내 용 : (전략) > 여성 아나운서 : 그런데 취재 도중 알게 된 또 다른 식당은 한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소문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관광 식당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 내레이션 : 오랜 전통과 뛰어난 음식 맛으로 언론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이 집. 그만큼 가게 안은 늘 손님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언론인터뷰에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던 사장님 과연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먹일 수 있을까? 쌀국수 안에는 죽은 초파리와 개미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고 이 쌀국수는 육수만 부어 손님상에 나가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돼지갈비에서 철수세미까지 발견. 몇 해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 손님을 받고 있다는 이 집. 그리고 대형 여행사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 제작진 : 혹시 ○○ 투어에서 오신 거예요?

▷ 녹취 (기사) : 네. 상태 안 좋아요. 지저분하다는 거죠. (음식이) 거의 그렇죠 아주 배고프지 않으면 참으면 되는 거죠. (가이드들이) 이야기 한데로 가는 거죠. 합의(계약) 끝난 데로 가는 거죠 견적 내서 사장님이 많이 받으면 나머지(가이드들이) 갖는 거죠 기본(가격) 빼놓고는 어디에 얼마 내는 게 딱 나오잖아요.

▷ 내레이션 : 실제로 음식점과 여행사 간에 리베이트가 이루어 지는 것일까? 음식값을 계산하는 가이드와 주인 간에 영수증이 한번 건네지고 이후 무언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목격되었는데.

▷ 남성 아나운서 : 맛집으로 소개된 이 식당의 실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오래된 식당만의 전통과 맛은 온데간데없고 비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을 보면 관광 한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 여성 아나운서 :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특히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 또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이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해당 구청에 찾아가 제보를 하고 단속 및 점검을 해 줄것을 요청해봤습니다.

▷ 내레이션 : 해당 음식점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제작진.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했다.

▷ 송파구청 : 여기가... 통화하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 제작진 : 중국인들 단체관광객을 받아요. 그걸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송파구청 : 우리는 당연히 가서 확인하죠. 내일 오후에 가면 월요일에 알려 드리고 혹시 뭐 오전에 가게 되면 빠르면 내일 오후에도 알려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원칙대로 점검하고 사실 통보하는 거니까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투명한 사회고 저희가 성심껏 단속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내레이션 : 확실한 단속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약속한 날짜에 해당 구청의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당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제작진. 마침 8시 50분경 식당을 찾아온 단속반을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보통 식당의 영업시간에 비해 이른 단속시간. 그리고 단속반은 식당에 들어간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당 사장의 명함만을 갖고 식당을 나왔고 제작진에게는 오전 11시에 다시 단속을 하러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오후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단속을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다시 재단속을 요청.

▷ 송파구청 : 아니요. 그 사람들(식당)은 눈치 못 챘고 어쨌든 다음 일정에 (단속) 해드릴게요. 걱정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나 진짜 바빠요.

▷ 제작진 : 단속을 하실 의무는 주임님 일이시니까.

▷ 송과구청 : 한다고요.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 내레이션 : 구청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는 사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저질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 송과구청 : 어제 실시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 불결하고... 그런 사실은 모두 적발했거든요.

▷ 내레이션 : 해당 구청의 단속 이후 식당의 위생상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지 찾아가 봤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원래가 잘 웃어요.

▷ 녹취 (종업원) : 웃는 것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음식 앞에다 놔두고 웃어 침 튀기는디?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침 튀길까 봐요?

▷ 녹취 (종업원) : 예.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웃지말까요?

▷ 내레이션 : 단속 이후여서일까. 위생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주방직원. 하지만 주방기구가 보관된 선반을 행주로 한번 닦아 냈을 뿐인데 묻어나는 검은 때.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이 담긴 양념통. 오랜 전통의 맛대신 양념 통의 찌든 때가 이 집의 세월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이 찌든 때가 음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음식을 조리할 때 재료에 직접적으로 닿는 식칼의 보관상태는 제작진을 당황케 했다. 그런데 그 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생상태. 도저히 구청의 단속 이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개념 자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해봤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 주방의 실체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양파 같은 건 까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 시키면 그 자리에서 채 썰어서 나가고.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양파를 썰어야돼요?

▷ 녹취 (종업원) : 그럼 양파를 썰어야되지.

▷ 내레이션 : 채소를 씻지 않는 것은 기본 그리고 갈비 주문 시 기본 반찬으로 많이 나가는 채를 썬 양파. 늘 손님이 많은 만큼 양파의 양도 많은데. 그런데 이 양파를 썬 기계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를 썰었던 기계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살 수 있어 반드시 익혀먹어야 하는 돼지고기인데. 그곳에서 양파를 바로 썰어 손님 상으로 나가고 있었다. 제작진이 서울시 위생과에 알아본 결과 도마와 마찬가지로 고리를 썰었던 육절 위에서 바로 채소를 썬 것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한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더러운 음식찌꺼기가 밑으로 흐르는데 소쿠리에 받침대 없이. 그냥

밑에다 두고 씻으니까 같이 묻는 거예요 밑에거는.

▷ 내레이션 : 뿐만 아니라 이 소쿠리의 보관 장소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바로 옆. 중국인 관광객에게 나가는 돼지갈비는 불결해 보이는 냉장고에 덮개도 없이 보관되어 있었고 주문과 동시에 언제 재워두었는지도 모를 돼지갈비가 홀서빙 직원에 의해 제대로 된 고기양의 측정도 없이 손님 상으로 나가고 있었다.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중국인 관광객. 게다가 호일은 찢어지기 쉬워 고기가 불판에 닿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씻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 만큼 묵은 때 그리고 녹이 슬어 있는 불판.

더 황당한 것은 세척과정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다음 중국인 관광객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집의 불판. 주방 냉장고에서 포장된 버섯을 꺼내는 종업원. 그런데 씻지도 않고 포장지 채 그냥 찢어 된장찌개에 대충 찢어 넣는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채소 역시 씻지 않았다.

음식에 정성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식당.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반찬을 버리지 않고 따로 놔두는 주방 종업원.

▷ 녹취 (종업원) : 이런 건 놔둬라...

▷ 내레이션 : 손님 상에 나갔다운 김치는 그대로 김치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 녹취 (종업원) : 요즘은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니까 잘못 되면 큰일 나.

②

인터넷 jbc: 『다시보기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bc <미각스캔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이 방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도 삭제한다)

• 피신청인2.는 jbc의 홈페이지 <미각스캔들>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 중 신청인 관련 동영상은 삭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해당식당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점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2012년 jtbc 미각스캔들 9회 2012년 4월29일 일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편의 두 번째 소개 되었던 [두 얼굴의 중국관광식당]의 방송내용중 자극적인 화면과 과장, 왜곡, 표적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다음 사항은 사실이 아님으로 확인되어 이에 저희 방송사는 정정보도를 합니다.

가. 며칠째 죽은 초파리와 개미가 들어있는 쌀국수는 며칠째 방치된 것이 아님으로 확인되었고
나. 음식점과 여행사 간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상황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다. 직접 일한 사람이라는 제보자는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씻지 않는 채소와 감자탕에 들어가는 안씻은 고기, 더러운 양념통, 고기를 찢었던 육절위에서 바로 채소를 써는 것과 덮개도 없이 보관된 돼지갈비, 양 측정없이 나가는 고기는 잠입취재원의 왜곡된 촬영과 허위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확인하여 방송내용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정정하여 알립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2012년 5월 24일까지 인터넷 조정대상방송 (http://home.jtbc.co.kr/Vod/VodView.aspx?prog_id=PR10010072&menu_id=PM10012525&epis_id=EP10011930) 및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식당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은 담당 책임자 명의의 사과문을 2012년 5월 24일까지 발송한다.

2012. 05.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1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사 건 : 2012서울중재15 추후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2년 3월경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2012서울조정709)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는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중국적으로 따르겠다는 취지로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내 용 : 기업체의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돈을 뜯으려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 출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가 작년 9월 ‘사이트를 폐쇄할테니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남모 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또 작년 9~11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모 정수기 안티사이트 등 6~7개 사이트에 가명으로 접속해 “편법 유통회사들이 구직자나 부녀자들 등쳐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경찰에서 “몇 년 전 한 다단계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 앙심을 품고 안티사이트 운동을 벌이다가 협박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연합뉴스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안티사이트 운영자 남모씨 무죄 확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4년 2월 3일자에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포경찰서가 J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의 폐쇄를 미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남모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씨는 8년이 지난 금년 3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과 남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J모 출판사는 지난 2007. 3. 30자로 폐업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조차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

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같게 한다.

2. 위1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의 하단부에도 <별지>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며,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통신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의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2004. 2. 3.) 제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J모 출판사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 2012년 3월 29일 대법원이 신청인의 J모 출판사 협박 등 혐의 일체에 대해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가 밝혀진바, 신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 판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J모 출판사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 하는 등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제출자료(대법원 2011도1716, 2012.3. 29.선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추후보도 등을 통해 중재대상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에게 신청인의 무혐의 판결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 대법원 판결문, 양 당사자의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중재결정한다.

2012. 05. 22.

<별지>

가. 제 목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나. 본 문 : 지난 2004년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모 씨가 8년여 만인 지난 3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씨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무죄를 입증 받아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추후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내 용 : <중재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2

통합진보당원인 신청인이, 5살 때부터 당원이었던 딸을 대신해 10년 동안 대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756·75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중에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통합진보당의 투표권은 13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므로 대리투표 가능성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기사 제공 언론사인 조선일보(2012서울조정752·753)와 조선닷컴(2012서울조정754·755)을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중재부는 당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커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트(2012서울조정758·759)와 다음(2012서울조정760·761)을 대상으로 각각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고, 심리결과 네이트와 다음이 해당 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각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네이버 : 『**다섯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내 용 : 통합진보당 당원 가운데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당원토론회에 참석한 창원시의 한 당원은 “내 딸이 다섯 살 때부터 10년째 진성(眞性)당원인데 당원 자격을 선거법상 투표 나이인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도록 당규

를 개정하면 내 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나이에 관계없이 한 달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경우 5,000원, 그 이상은 1만 원의 당비를 내면 투표권을 갖는 진성당원이 된다. 진보당은 이번에 만 19세 이상으로 당원 자격을 제한하려는 논의를 벌이다 실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창원시당 관계자는 “그 정도로 당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분”이라며 “어린 나이지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서 당에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다섯 살은 너무 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며 “청소년 당원에게도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빠가 정보를 주고 아이가 판단해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비는 (부모가) 대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만 용돈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당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족 당원들도 많다”며 “조○○ 진상조사위원장이 지금까지 당이 해왔던 특수성을 모르고 (중복 IP 투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노당 당규에는 13세 이상만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딸은 그동안 청소년 당원으로 활동은 해왔지만 부모가 대리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진상조사위원장 측 관계자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위원장이 다 공개한 게 아니다”며 “부정경선 자료는 더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철호 부산 금정구의원 역시 “1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당권파가) 회의를 방해하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집착하면 그대들(당권파)은 모두 죽을 것이고 그대들의 과거까지도 부정당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홈페이지 뉴스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나타나도록 하고 48시간 동안 게재된 이후에는 기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 대상 기사의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다섯 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네이버는 지난 2012년 5월 12일자 검색창에 “통합진보당 당원 가운데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민주노동당 당규 상 만 13세 이상만 투표권이 주어짐으로 부모가 원천적으로 투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조정대상기사의 삭제 요청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 조치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5.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3

KBS노사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 폐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890·891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KBS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KBS 노사가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와 대선 공정방송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방송사는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등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파업중단,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등으로서 보도와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 『**MB 라디오 주례 연설 사라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KBS 파업 철회를 위한 노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KBS 노사는 공정보도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을 폐지하고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KBS 새노조는 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파업 94일 만에 KBS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MBC, YTN, 연합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BS 노사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와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사측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해고된 최○○ 기자에 대한 재심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송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 파업을 접고 보도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강제 폐지된 탐사보도팀을 부활시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복원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을 해놓고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사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돼 편파 · 왜곡 보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실대 김○○ 교수는 “KBS 파업이 종결되면서 MBC 파업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공정보도 투쟁을 통해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19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보 6월 8일자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제목의 글에서 KBS 노사가 파업철회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최소화 등에 합의했다’는 기사제목과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파업중단,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소통하는 조직문화, 라디오 매체 활성화’가 명시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내용 : 본지는 지난 6월 8일자 1면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기사에서 KBS 노사가 파업철회와 관련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KBS 사측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소통하는 조직문화, 라디오 매체 활성화’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경향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KBS 노사 파업철회 합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4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 직원인 신청인 2.와의 전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37·938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대한치과의사협회, 2.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가에 비해 원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2.의 음성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1.은 임플란트 가격은 의료법상 비급여항목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플란트 수가는 재료비 외에 의료진의 경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 2.는 동의 없이 본인의 음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2천1백66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40)

내 용 : ▷ 내레이션 : 인공치아 이식술인 '임플란트'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잡을 수 없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 인터뷰 : “심구 씌우고 해서... 200만 원 정도”

“200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80만 원”

“120만 원 국산 것으로 해서”

▷ 내레이션 :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 여러분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협회가 잘못됐다며 ○○치과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내레이션 : 최근 치과계는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네트워크 치과와 이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양측이 고소, 고발을 불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갈리는 공방의 중심에는 저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 홍○○ (○○치과 홍보팀) : 처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가격 덤핑때문이었습니다. 저희를 가격 덤핑 치과라고 하고 네트워크 치과들을 비난했어요. 네트워크 치과에서 진료 원가를 공개, 저가 임플란트를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원가, 원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공산품도 아니고..(의료가 그렇잖아요)

▷ 내레이션 : 임플란트 가격, 치과를 찾아가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 인터뷰 : (치과 4곳의 화면이 각각 나오면서) ‘3개에 310만 원’

‘임플란트는요 치아 하나에 120만 원~150만 원’

‘5월 행사가 80만 원’

‘150만 원~180만 원’

▷ 내레이션 : 달라도 너무나 다른 임플란트 가격. 정확한 임플란트 가격 확인을 위해 임플란트 자재를 취급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이것들은 국내 400여 곳의 치과에 납품을 하는 제품들이예요.

▷ 내레이션 : 임플란트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들.. 그 원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픽스처, 어버트먼트, 커버 스크류, 필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이션 코핑 등 (임플란트 수술에) 5~6가지의 자재가 들어가죠, 다 합치면 10만 원 정도 합니다.

▷ 내레이션 : 국내 5개 회사의 자재 원가를 확인해 보니 평균 12만 원! 치과마다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임플란트 비용,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 치과업계 종사자 :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덜 벌고 손님에게 싸게 해 드리고 싶다고 하면 더 싸게 해 드리는 거죠. (선생님을) 잘 아시면 (가격을) 더 빼드리는 것도 있어요.

▷ 방송 관계자 : 치과의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 치과업계 종사자 : 그렇죠.

▷ 내레이션 : 그리고 수입 임플란트는 국산보다 비싸다는 게 일반론인데요.

▷ 치과의사(익명) : 저희가 쓰는 게 독일제거든요. (화면을 보이면서) 이것인데요.

▷ 방송 관계자 : 하나에 (얼마예요)?

▷ 치과의사(익명) : 원래 220만 원 받아요. 근데 (지금은) 180만 원 정도.. (국산 자재보다) 외국제품은 아주 비싸죠.

▷ 내레이션 : 과연 자재 원가도 그럴까요.

▷ 방송 관계자 : 하나에 (얼마예요)? (국산과 수입산) 자재 원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 방송 관계자 : 그런데 왜 훨씬 비싼가요?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마진(중간이윤)을 더 붙이는 거죠. 수입산에다가... 명품가방과 똑 같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이름 하나로 굉장히 비싸잖아요.

▷ 내레이션 : 국산과 수입 임플란트 자재 원가 차이는 15만 원대. 하지만 상한가 기준없이 가격을 치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임플란트 가격은 제각각인데요.

▷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 전문지식을 환자한테 주는데 있어서 어떤 의사는 (임플란트 수술을) 70, 8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의사는 “내 경력 때문에 200, 300만 원은 받아야 돼” 하며 200,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원가 원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내레이션 :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들쭉날쭉한 임플란트 비용, 충분한 비교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치과 고○○원장 : 진료의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수익이 좀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진료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은 의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레이션 : 믿을 수 있는 가격과 의료의 질이 동반될 때 비로소 소비자 신뢰도 함께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에서 성우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16p 정도)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제목 아래에는 양 단체가 합의한 세부 사항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종방 시사보도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 ‘천차만별 치과임플란트 가격’ 반론

2. 내 용 : ▷ 앵커 : 지난달 종방된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에서 5월 17일 방송된 “천차만별 치과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방송내용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임플란트 수가가 다양해 적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비보험인 임플란트 수가는 적정기준을 정할 경우 담합행위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나 현재 치과마다 비보험 수가를 진료실 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어, 환자들은 원하는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원가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의료수가에서 원가는 일부 요인일 뿐, 대체로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기술, 경험, 그리고 시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정하기에 원가만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방송에서 지적한대로 저수가를 내세운 네트워크 치과와 수가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으며 단지, 의료질서 문란 행태에 대해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취재 건과 관련해 부연 설명하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여 불리하게 편집, 방송하였기에 신청인 2.에게 손해배상 2,166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세상보기 시사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MBC는 지난 5월 17일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치과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보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가는 적정기준을 정할 경우 담합행위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치과마다 비급여수가를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의료수가는 재료 원가 외에 의학적 지식과임상기술, 경험, 그리고 시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정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 7. 11.(수) 18:50에 방송되는 MBC-TV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보도문을 아나운서 또는 성우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

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 및 2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MBC-TV :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세상보기 시시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1일자 18: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5

흡연억제용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해롭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명이 찍혀있는 전자담배를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67·968·96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미국내 일부 주들이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전자담배 용액 1ml의 니코틴 함량 최고수치는 (일반 담배) 723개비와 같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미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주는 없고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훨씬 유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로고와 상표 등을 수차례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스펀지」 프로그램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일자 20:50)

내 용 : ▷ 남 : 크게 배터리, 분무기, 카트리지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 이 억제제가 단번에 전자담배로 바뀔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 여 : 따라서 흡연욕구 억제제에 니코틴 액상을 바꿔 끼우기만 하면 바로 무늬만 흡연욕구 억제제인 전자담배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바로 전자담배의 액상을 직접 제조하기까지 한다는 것!

▷ 남 :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 부모님들이 직접 전자담배

를 구입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옳은 것일까요?

▷ 여 : 전자담배 사용으로 니코틴을 과다 흡수하게 되면 두통과 구토는 물론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코틴에 중독되게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석결과, 일반 농도의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은 ... 일부 전자담배에서는 용액 1ml당 최고 36.15ml의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니코틴 치사량이 10mg임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 남 : 이렇게 위험한 전자담배! 정말 자녀의 금연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전자담배를 판매금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전자담배 판매금지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일 <스펀지> 프로그램에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라는 제목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 전자담배를 판매금지한 주가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당 당국에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아직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전자담배의 액상이 기화된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의 양은 연초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것보다

현재까지 적어”(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된 ‘니코틴’ 관련 반론보도문)

2.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일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라는 제목으로 “전자담배 용액 1ml의 니코틴 함량 최고수치는 723개비와 같다”고 하여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는 연초담배에 표기된 니코틴의 함량은 ISO10315 규격에 따라 해당 연초담배를 연소시켜 그 기체에 포함된 니코틴의 양이므로, 기화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용액에 포함된 니코틴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전자담배의 용액을 ISO10315 규격에 따라 기화시키면 극히 일부의 니코틴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초담배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의 니코틴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 지난 6월 1일 방송한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방송에 대해 ○○○○○○ 등 전자담배 회사 측은 “현재 미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주는 없고,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기화방식과 니코틴 표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 자체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과 일반 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을 단순 비교해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17일(금) 이전에 방송하는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직전에 메인 진행자인 김○○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제1항 보도문을 방송하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

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보도문의 방송영상을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KBS-2TV : 「스펀지」 프로그램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20: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6

신청인이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86·987, 2012서울조정988·989(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증권사가 대학생 인턴사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사측이 영업실적 전체 1등인 A 인턴사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인턴사원이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린 사람은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인 각각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조선일보 :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 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A10면)

내 용 : ○○증권이 대학생 인턴사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영업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높은 실적을 올린 인턴만 채용하겠다고 영업을 강요해 2,600억 원대의 주식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전체 인턴의 절반 미만의 인원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보험사·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112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이

들은 3,529개 증권계좌에 2,689억 원의 주식 투자대금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선발한 인턴의 42%인 47명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들은 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인턴 한 사람당 적게는 10억 원 안팎을, 많게는 60억~70억 원 정도를 끌어왔고, 회사 측은 인턴 개개인의 실적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턴들의 영업으로 개설한 계좌에서는 50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이 생겼다.

금감원은 또 인턴사원이 일임매매(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지 증권사에 맡기는 것)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자격증 없이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다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증권이 영업 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끌어온 고객이 손해를 보자 자비로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면 ○○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임원 문책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②

조선닷컴 :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 뉴스(<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뉴스 메뉴 사회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A씨 불만을 품고 외부에 제보를 했다’는 문구는 기자의 개인적 소견일 뿐, 금감원 보도자료

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져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A10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영업실적 1위를 했던 A가 채용에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손○○ 기자 본인의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인 것처럼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목 : ‘A씨 불만을 품고 외부에 제보를 했다’는 문구는 기자의 개인적 소견일 뿐,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져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A10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영업실적 1위를 했던 A가 채용에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손○○ 기자 본인의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인 것처럼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1.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일보> 2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활자 및 크기로 2단

에 걸쳐 게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닷컴>(www.chosun.com)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하단에도 <별지2>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3. 피신청인들은 위 1.항 및 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1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감원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증권사를 부문 검사한 결과 ○○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영업 실적을 정직원 채용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는 여러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한편 피신청인1은 2012. 6. 28.자 조선일보 10면에,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 사회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 ○증권사가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교보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각각 보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증권이 영업실적 전체 1등이었던 신청인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이 ○○증권이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들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피신청인2.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영업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라고만 표현하여 보도에 나온 A씨가 신청인이라는 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추가 취재를 거쳐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에 대하여 조정대상보도에서 당사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보도 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정정보도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대상보도의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언론매체에 다뤄진 바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증권’으로 한정하였으며 당사자를 ‘○○증권 영업실적 전체 1위’라고 특정하고 있는 A씨가 신청인임을 고려하면 해당 증권사의 인턴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A씨가 신청인이라는 점을 추지할 수 있는 바,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는 이 사건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6. 27. 경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실적과 연계된 정직원 채용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권회사 영업인턴사원 운영행태에 대한 검사결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더해 ‘○○증권 영업실적 전체 1등이었던 A씨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해 살펴본다.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사의 내용, 형식, 피신청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10.

<별지1>

가. 제 목 : ‘○○증권 인터넷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 10면 「○○증권, 인터넷사원에 영업 압박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터넷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증권이 인터넷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가. 제 목 : ‘○○증권 인터넷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 10면 「○○증권, 인터넷사원에 영업 압박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터넷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증권이 인터넷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①

조선일보 : 『‘○○중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A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②

조선닷컴 : 『‘○○중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사례 17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021 · 1022, 2012서울조정1023 · 1024(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소비자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예약, 취소, 환불 규정을 어기고 위약금을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펜션업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뉴스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중인 펜션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잘못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iMBC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화면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담긴 영상 부분을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 또는 삭제하는 한편 MBC-TV와 iMBC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iMBC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정청구(2012서울조정1025)를 제기하였고, 조정신청 후에 네이버가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①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비자등친 펜션'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8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 기자 : 권 모 씨는 지난 6일 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펜션측은 위약금으로 숙박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권 모 씨) : “자기들 규정에는 7월 전에 취소해도 50%고 4일 전에 취소해도 50%고...”

▷ 기자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성수기 땀 열흘 전에 해약하면 숙박요금을 100% 환불해 줘야하고,

7일 전에는 90%, 3일 전에는 50%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어기고 숙박요금의 40%까지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5개 업체들은 과도한 요금을 정상요금인 것처럼 신고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광○○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증으로 허위표시...”

▷ 기자 :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5백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를 빌릴 때보다 더 넣은 기름값을 정산해주지 않은 업체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입니다.

②

iMBC: 『**소비자 등친 펜션 · 렌터카.. '꼼수 할인' 적발**』 제하의 기사(2012년 6월 2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 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MBC 홈페이지(imbc.com)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소비자 등친 펜션’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28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 등친 펜션”이란 제목하에 소비자에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예약 · 취소 · 환불 규정을 어기고 위약금을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펜션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과 전혀 무관하고 분쟁이 없는 경기도 청평소재 ○○○○○ 펜션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잘못 방영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시된 조정 대상보도 화면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나온 부분을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 또는 삭제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사례 18

jtbc 방송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도둑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제이티비씨

피신청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jtbc 소속 기자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취재를 하였으며, 10여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라고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방송사는 자사의 소속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신분을 밝힌 후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적절히 편집된 분량을 방송에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골육』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1일자)

내 용 : 중앙종편의 주접스러운 ‘도둑인터뷰’ 행태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중앙종편의 ‘도둑 인터뷰’, 자신들의 초라한 실상만 보여줬다> 제하의 논평에서 중앙종편이 ‘조중동방송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야당 정치인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 인터뷰를 받아낸 뒤, 이를 ‘직격인터뷰’로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앙종편은 메인뉴스에서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9명의 후보들을 다룬 연속 보도를 내놨다. 12일에는 박지원 · 이학영 · 박용진 후보, 13일에는 김부겸 · 이강래 · 이인영 후보, 14일에는 한명숙 · 문성근 · 박영선 후보를 다뤘다.

민언련은 이 보도가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격인터뷰’라는 제목과

달리 14일 방송된 한명숙·문성근·박영선 후보 보도에서는 인터뷰 없이 이들 세 후보의 연설 모습을 보여주고 약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12일과 13일에 방송된 나머지 6명 후보자들 보도에서도 실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긴 했으나, ‘직격인터뷰’라는 말을 붙이기엔 인터뷰 시간과 장소 등이 매우 어색했다며 “대부분 후보들이 짧게는 13초에서 길어야 38초 정도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쳤고 내용도 일반적인 ‘정견발표’ 수준이었고 인터뷰 장소도 어수선했는데 후보자가 유세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후보자가 이동하는 중에 마이크를 들이대 걸어가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무엇보다 중앙종편이 인터뷰를 받아낸 6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조중동 종편의 인터뷰와 출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지난 1월 7일 함○○(안중근기념사업회이사장), 박○○(전 대한변협회장) 등 사회원로 20명이 보낸 조중동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조중동 종편에 대해 인터뷰와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방송에서 보여준 중앙종편의 취재 행태가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없었고, 지난해 11월 중앙일보의 김○○ 씨 인터뷰 기사에서도 집에서 나오는 김 씨를 붙잡고 억지로 몇 마디를 받아낸 뒤 김 씨의 집 평수, 차종, 핸드폰 종류 등등 ‘신상털기’ 수준의 내용을 담아 비난을 받은 일도 있어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언련의 사실 확인 결과 중앙종편에 인터뷰를 ‘당한’ 6명의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중앙종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사회원로들과의 약속을 결과적으로 어긴 것처럼 보인 데 대해 죄송하다’, ‘조중동 종편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또 중앙종편이 어수선했던 상황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소속조차 밝히지 않았고, 한 캠프에서는 이런 무례한 취재방식 때문에 ‘도대체 어느 언론사인지 불쾌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적도 없이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데 대해 당황하는 후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위법과 특혜로 탄생한 조중동종편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조중동종편에 출연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중앙종편은 ‘직격인터뷰’라는 기획을 하고도 그에 어울리는 내용을 채우지 못했던 모양”, “‘조중동방송’의 낙인이 찍힌 채 인터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인터뷰어의 소속조차 밝히지 못한 채 ‘도둑인터뷰’를 받아내고,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로 포장해서 내보내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당당하게 인터뷰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능력에 벗어나는 보도기획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옳다”고 힐난했다.

더 나아가 민언련은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 조중동종편에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을 하고 싶지 않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앞으로 ‘자나 깨나 조중동 조심’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방심한 틈을 타 언제 어느 때 조중동종편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직격인터뷰’, ‘전격인터뷰’ 따위의 과대포장을 해서 방

송에 내보낼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신청취지

오마이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도둑인터뷰’ 해야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중앙 종편’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본 매체는 지난 1월 21자에 “‘도둑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jbc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할 때 마치 jbc 소속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인터뷰를 하고, 경선 후보자들은 jbc 인터뷰인지 몰랐으며,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라고 포장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jbc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jbc 소속 기자들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jbc 소속 기자임을 미리 밝히고 인터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해 후보자들이 이미 jbc 소속 기자와 인터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② 10여 초 정도의 답변 내용을 과대 포장하여 방송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jbc가 방송 분량에 맞게 적절히 편집하여 방송하였으며, ③ 인터뷰 시간 및 장소가 어수선하고, 그 내용도 정견발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jbc측에서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과 현장의 생생함을 고려하여 지역별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판단에 따라 경선장소에서 인터뷰가 이뤄진 것이며, 각 인터뷰가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여 모든 인터뷰 내용이 정견발표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 등 기사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오마이뉴스가 허위보도한 것처럼 ‘도둑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엄연히 인터뷰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소속과 기자 이름을 밝히고 jbc 로고가 선명한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정정당한 보도였기에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jbc와 소속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1. 보도문

가. 제목: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21일자 미디어면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제하의 기사에서 “jibc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소속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인터뷰를 받아낸 뒤,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 인터뷰라고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인터뷰를 했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해당 언론사가 jibc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다만, jibc 기자들은 본인의 소속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주접스러운 도둑인터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jibc 측은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jibc가 방송 분량에 맞게 적절히 편집하여 방송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과 현장의 생생함을 고려하여 지역별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판단에 따라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 설명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8.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중편의 굴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9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보조금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직판정도 받았다.

사 건 : 2012강원조정5·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임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한노인회 춘천지회가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사무국장 임 모 씨와 총무부장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징계처분은 보조금 횡령과는 전혀 무관하고 보조금은 올해 초 전액 반납된 것으로 밝혀진 동시에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에서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춘천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4일자 21:00)

내 용 :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지회가 직원 2명을 징계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춘천지회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회계전반을 관리하며 각종 보고서를 지연 혹은 제출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사무국장 68살 임 모 씨와 총무부장 45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춘천지회가 보조금 4,3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해당 직원들은 면직처분에 반발해 법정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춘천KBS-1TV <뉴스9-강원>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4월 24일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사무국장 68살 임 모 씨와 총무부장 45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보조금 횡령과는 전혀 무관하며 보조금은 2012년 2월에 전액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보고서 지연 및 미제출된 사유로 징계처분 받았으나, 이는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일어난 사태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7월 3일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주문에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기에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4일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이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가 사무국장 임 모 씨와 총무부장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 모 씨와 최 모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 8. 16.자 춘천KBS1-TV <뉴스7> 및 <뉴스9(강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8.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춘천KBS-1TV : (1)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19: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춘천KBS-1TV : (2)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21: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0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151, 2012서울조정1156(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용노동부

피신청인 : (주)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 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기관은 노동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탈퇴나 가입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이를 게재한 네이버(2012서울조정1152)와 다음(2012서울조정1153)을 대상으로 각각 정정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이들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 (1) 『“돈 줄데니 민주노총 탈퇴를” ...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내 용 :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 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 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

지 1억 8천만 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 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 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 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 원과 1억 1,200만 원, 2,000만 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공금증을 낳았던 터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뒤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내 용 : “역대 최악의 장관이다”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장관의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 분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의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 이 장관 재임 1년을 ‘재앙과 후퇴의 시기’로 못 박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노동단체가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수장에 대해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근 노동부의 타임오프(노조전임시간 상한제도) 지도점검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동부는 2년전 시작된 타임오프 정착 여부를 살피겠다는 단위 사업장에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조에 제공했던 사무실 제공과 집기, 비품 등 각종 편의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각종회의나 행사참여, 교육참여 등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무실 관리비가 연체돼 전기와 수도, 전화가 끊기는 노조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 노무사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정해진 전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도 공개해야하는 등 노조들끼리 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노조간 합의가 안되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임자 없이 노조가 운영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지금의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조는 5년 내에 거의 정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부가 점검 결과를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서’라는 이름의 행정공문으로 사업장을 속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지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여서 남용될 여지가 많다.

노동부가 올 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천여 곳에 대해 타임오프에 대해 감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만큼의 시정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이를 “전두환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극심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노동부 차원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견제는 이 장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장관은 2010년 차관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이 장관은 타임오프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 이○○ 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장이 2010년 5월 타임오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가해 기습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시위자들도 기소유예 처리를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 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다”며 “당시 노사정책실장에서 3개월 만에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던 이채필 장관이 노조 전임자 잡기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노조 위원장을 고발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사건’이다. 이 장관의 의도적인 노조 배제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취임한 이후 양대 노총을 방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또 해외 행사장에서를 제외하고는 두 노총 대표자들을 면담한 적도 없다.

한국노총 이○○ 사무처장은 “예전 노동부 장관은 현안이 있으면 노동단체와 만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 장관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노동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노사관계는 파트너십으로 풀어야하고 이는 노동부가 거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데 앞장서는 이 장관의 행태는 한마디로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 잘하는 장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더 거칠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제안” 기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2년 7월 12일자 노컷특종면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 ... 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신문은 7월 12일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7월 16일자 “전두환 때보다 더해... 노동부 장관 ‘멘붕’ 왜?” 기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게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이용해 탈퇴를 권유하거나 국민노총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때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단체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국회에는 성실히 보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당시 답변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의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8월 28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사회면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7월 12일 “돈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7월 16일 “전두환 때보다 더해... 노동부 장관 ‘멘붕’ 왜?”)의 본문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8.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1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장학기금이 ‘영암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광주조정55 정정청구

신 청 인 : 영암군

피신청인 : 한국산업건설(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농협이 영암군의 예산을 예치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이자율을 책정하고, 그 차익으로 영암군민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자치단체는 군수가 금고약정 금융기관의 금리를 저금리로 약정해주고 그 차액을 군민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보로 인해 영암군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삼군신문 :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1면)

내 용 : 영암군은 지난 24일 배포해 지역 신문에 게재토록 한 ‘(재)영암군민장학회(이하 군민장학회, 이사장 김일태 군수), 장학기금 100억 돌파’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 사실 왜곡 논란과 군민장학회 김일태 군수의 치적세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군민장학회가 지난 2008년 장학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출범 4년 만에 장학기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으며, 개인기탁자와 기업기탁에 관한 언급과 이사장인 김일태 군수의 기탁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왜곡을 주장하는 군민 A씨는 “군민장학회가 밝힌 장학기금 103억 중 절반이상이 지난 박일재 군수 임기 때와 김철호 군수 임기를 거치며 현 김일태 군수까지 군비 1억~2억씩을 지원받아온 인재육성장학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더 많음에도 군민장학회와 이사장의 공적만 언급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재육성장학기금을 군민장학기금으로 흡수 통합할 당시 인재육성장

학기금은 총 5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민장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재육성장학기금과 군민장학기금이 따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단법인 형태로 통합 관리되고 있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포함한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왜곡 보도라는 주장은 오해다”라며 “최초 보도자료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흡수해 통합한 것으로 언급했지만, 분량을 줄이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왜곡보도 주장과는 별도로 현대삼호중공업이 군민장학회에 기탁한 20억의 성격에 대한 잡음이 있었고,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은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1992년에 영암군민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정, 그동안 영암군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오다 2008년에는 교육 1등급군을 목표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를 출범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재)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를 폐지해 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기금으로 흡수 통합한 바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삼군신문 메인페이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정정보도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메인페이지에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이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차익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이므로 이에 따른 영암군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기사내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해당 기사가 잘못 보도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 1면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이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자율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지 않았고, 그 차익으로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위 정정보도문을 삼군신문 6면 우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2. 08.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삼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4일자 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2

신청인 회사의 택시 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188 · 1189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운수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택시의 주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 하면서, 신청인의 택시 주차지로부터 1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택시 주차지와 인근 초등학교 간의 거리 및 올림픽대로의 우회 경로 거리 등이 잘못 보도 되었으며, 조정대상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택시 주차 승인 취소처 분을 받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담당중재부는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조사를 실시했으며,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 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서울경제에 대해서도 정정 · 손해청구(2012서울조정1190 · 1191)를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인터넷 서울경제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 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경제 :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일자 16면)

내 용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박모(41)씨는 얼마 전 학교 인근에 택시 회 사와 함께 택시 주차지가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등하곳길 학부모들의 승용차만 군데군데 눈에 띄던 학교 정문 앞 좁은 길이 택시로 가득 차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쿨존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30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택시회사 ○○운수는 지난 2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4월 초 택시 주차지 공사를 완료했다. 79개의 주차면을 확보한 2,100㎡ 부지는 5월 초부터 ○○운수의 택시 주차지

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주차지로부터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바로 옆에는 중 장비와 대형화물차 주차장도 있다. 학부모들과 인근 아파트 부녀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1,000여명의 학부모는 스쿨존 안전을 위해 택시 주차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명서를 제출했고 부녀회와 함께 구청의 인가 조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고지 위치를 볼 때 택시가 학교 정문을 거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길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방법뿐이다. ○○운수 측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고 학교 앞으로는 택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유류비를 아껴야 하는 택시들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왕복 6~7km를 돌아야 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택시가 지나가는 학교 앞 도로는 정식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농로를 포장한 것에 불과해 택시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 박씨는 “택시 회사 측에서는 택시 교대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겹칠 경우 빙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며 “어떤 강제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택시회사 쪽의 자발적 노력 약속만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제도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구역 내에서는 등하교시간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 제재도 가능하다.

학부모들과 택시 회사 간의 극렬한 대치에 강동구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택시회사가 아닌 개인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도 “CCTV를 통해 택시가 학교 쪽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될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2011년 75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서울경제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암사동 ○○초교 100m 거리에 택시 주차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초교 100m 거리에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 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일자 사회면에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라는 제목으로 ○○운수(주) 택시 주차지로부터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230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더욱이 바로 옆에는 중장비와 대형화물차 주차장도 있다”고 보도해 택시 주차지가 중장비·대형화물차 주차장 옆에 있어 더욱 위험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중장비·대형화물차 주차장은 택시주차지에서 230m 떨어져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어 “유류비를 아껴야 하는 택시들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왕복 6~7km를 돌아야 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보도했으나 이 역시 1.9km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초교 인근 ○○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5월 1일,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동구청이 ○○초교 100m 위치에 택시주차지를 허가하여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수(주)는 택시들이 학교 앞이 아닌 올림픽대로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은 회사 택시들이 학교 정문을 피해 왕복 6~7km를 돌게 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초등학교 후문으로부터 택시 주차지까지의 거리는 100m가 아닌 약 200m이고, 해당 회사 택시들이 영업을 위해 올림픽대로를 거쳐 암사동 ○○마을까지 우회할 경우 거리는 1.4km이며, 천호대교 남단을 거쳐 ○○사거리까지 우회할 경우의 거리는 4.7km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 면에 제1항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의 부제목인 [“등하교 시간엔 빙 둘러가겠다” 택시 회사서 약속 내놔지만]과 같은 크기의 고딕으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9.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초교 인근 ○○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1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3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22, 2012부산조정23(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속 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병원 수술장비를 훔쳐 판 혐의로 신청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전하면서 신청인이 경찰측에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이 없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公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6면)

내 용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휴업 중인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훔친 이 모(2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께 사하구 한 병원에 들어가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수술장비 8종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자신의 아버지(51)가 건강보험공단 급여 6,7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자 법원에 낼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②

인터넷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公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사례 24

정부가 2012년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에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390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9.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정부가 2012년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를 체결하여 철도 경영권 개방 및 민영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외국자본이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 운송 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기관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가 체결되어 철도 경영권이 조달대상에 포함되거나 개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 철도 관제권은 국가업무로 조달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8면)

내 용 : 정부가 국내 철도 기간망 산업을 외국 자본 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텃다. 지난 3월 체결한 세계 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결서를 통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운용과 감독 등의 문호가 외국 자본에 개방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박원석(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번역 초안을 보면,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열차 운행을 통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 운용·유지 및 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조달 공개 대상 기관도 큰 폭으로 늘렸다.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열차의 객실·부품 위주의 조달 계약에만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정문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정부조달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협정문의 주석에도 ‘철도시설의 건설·감독·운영’ 등이 공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이다.

철도산업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일반 철도시설의 경영·감독’에 주목했다. 길만 뚫어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달리는 도로교통과 달리, 열차는 분·초 단위로 정밀하게 짜인 관제 계획에 따라 제한된 선로 위를 달리게 된다. 철로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은 면허만 따면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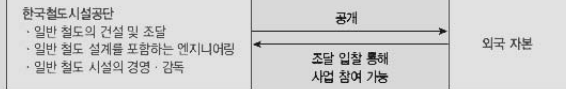
박○○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코레일에 있는 각 지역 역사의 소유권과 관제권을 회수하는 일에 골몰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협정문을 보면 코레일을 압박해 관제권과 역사 소유권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긴 뒤, 이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문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철도 분야의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 철도 기간 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철도산업의 최강자는 유럽의 철도산업체들이다. 미국에선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물류산업이 발달했지만, 유럽 각국의 교역은 일찍이 철도를 따라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해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세계 철도 시장의 50% 정도는 프랑스 알스툼, 독일 지멘스, 독일과 스웨덴의 합작기업인 아드트란츠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의 철도산업체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로 이어, 일본까지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물류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정부조달협정 초록도

정부조달협정(GPA) 공개대상 명시



※ 기존 17개 기관, 신규 8개 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속사 3개 대한 국외
1. 한국철도시설공단	1. 한국철도시설공단
2. 한국철도시설공단	2. 한국철도시설공단
3. 한국철도시설공단	3.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철도시설공단
8. 한국철도시설공단	8. 한국철도시설공단
9. 한국철도시설공단	9. 한국철도시설공단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철도시설공단
13. 한국철도시설공단	13. 한국철도시설공단
14. 한국철도시설공단	14. 한국철도시설공단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6. 한국철도시설공단	16. 한국철도시설공단
17. 한국철도시설공단	17. 한국철도시설공단
18. 한국철도시설공단	18. 한국철도시설공단
19. 한국철도시설공단	19. 한국철도시설공단
20. 한국철도시설공단	20. 한국철도시설공단
21. 한국철도시설공단	21. 한국철도시설공단
22. 한국철도시설공단	22. 한국철도시설공단
23. 한국철도시설공단	23. 한국철도시설공단
24. 한국철도시설공단	24. 한국철도시설공단
25. 한국철도시설공단	25. 한국철도시설공단
26. 한국철도시설공단	26. 한국철도시설공단
27. 한국철도시설공단	27. 한국철도시설공단
28. 한국철도시설공단	28. 한국철도시설공단
29. 한국철도시설공단	29. 한국철도시설공단
30. 한국철도시설공단	30. 한국철도시설공단
31. 한국철도시설공단	31. 한국철도시설공단
32. 한국철도시설공단	32. 한국철도시설공단
33. 한국철도시설공단	33. 한국철도시설공단
34. 한국철도시설공단	34. 한국철도시설공단
35. 한국철도시설공단	35. 한국철도시설공단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철도시설공단
39. 한국철도시설공단	39. 한국철도시설공단
40. 한국철도시설공단	40. 한국철도시설공단
41. 한국철도시설공단	41. 한국철도시설공단
42. 한국철도시설공단	42. 한국철도시설공단
43. 한국철도시설공단	43. 한국철도시설공단
44. 한국철도시설공단	44. 한국철도시설공단
45. 한국철도시설공단	45. 한국철도시설공단
46. 한국철도시설공단	46. 한국철도시설공단
47. 한국철도시설공단	47. 한국철도시설공단
48. 한국철도시설공단	48. 한국철도시설공단
49. 한국철도시설공단	49. 한국철도시설공단
50. 한국철도시설공단	50. 한국철도시설공단
51. 한국철도시설공단	51. 한국철도시설공단
52. 한국철도시설공단	52. 한국철도시설공단
53. 한국철도시설공단	53. 한국철도시설공단
54. 한국철도시설공단	54. 한국철도시설공단
55. 한국철도시설공단	55. 한국철도시설공단
56. 한국철도시설공단	56. 한국철도시설공단
57. 한국철도시설공단	57. 한국철도시설공단
58. 한국철도시설공단	58. 한국철도시설공단
59. 한국철도시설공단	59. 한국철도시설공단
60. 한국철도시설공단	60. 한국철도시설공단
61. 한국철도시설공단	61. 한국철도시설공단
62. 한국철도시설공단	62. 한국철도시설공단
63. 한국철도시설공단	63. 한국철도시설공단
64. 한국철도시설공단	64. 한국철도시설공단
65. 한국철도시설공단	65. 한국철도시설공단
66. 한국철도시설공단	66. 한국철도시설공단
67. 한국철도시설공단	67. 한국철도시설공단
68. 한국철도시설공단	68. 한국철도시설공단
69. 한국철도시설공단	69. 한국철도시설공단
70. 한국철도시설공단	70. 한국철도시설공단
71. 한국철도시설공단	71. 한국철도시설공단
72. 한국철도시설공단	72. 한국철도시설공단
73. 한국철도시설공단	73. 한국철도시설공단
74. 한국철도시설공단	74. 한국철도시설공단
75. 한국철도시설공단	75. 한국철도시설공단
76. 한국철도시설공단	76. 한국철도시설공단
77. 한국철도시설공단	77. 한국철도시설공단
78. 한국철도시설공단	78. 한국철도시설공단
79. 한국철도시설공단	79. 한국철도시설공단
80. 한국철도시설공단	80. 한국철도시설공단
81. 한국철도시설공단	81. 한국철도시설공단
82. 한국철도시설공단	82. 한국철도시설공단
83. 한국철도시설공단	83. 한국철도시설공단
84. 한국철도시설공단	84. 한국철도시설공단
85. 한국철도시설공단	85. 한국철도시설공단
86. 한국철도시설공단	86. 한국철도시설공단
87. 한국철도시설공단	87. 한국철도시설공단
88. 한국철도시설공단	88. 한국철도시설공단
89. 한국철도시설공단	89. 한국철도시설공단
90. 한국철도시설공단	90. 한국철도시설공단
91. 한국철도시설공단	91. 한국철도시설공단
92. 한국철도시설공단	92. 한국철도시설공단
93. 한국철도시설공단	93. 한국철도시설공단
94. 한국철도시설공단	94. 한국철도시설공단
95. 한국철도시설공단	95. 한국철도시설공단
96. 한국철도시설공단	96. 한국철도시설공단
97. 한국철도시설공단	97. 한국철도시설공단
98. 한국철도시설공단	98. 한국철도시설공단
99. 한국철도시설공단	99. 한국철도시설공단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난 3월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의결서에 한국 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등 신규 공개 대상기관이 명시돼 있다. 주석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가운데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 감독, 경영 등이 공개 대상으로 설명돼 있다.]

한국 철도 기간망이 외국 자본에 열리게 되면 유럽 철도산업체가 과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이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결국 외국 자본을 향해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지하철 9호선 논란을 보듯 공공의 영역에 외국 자본이 들어설 경우 부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도 “철도 기간망은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협정의 특성상 한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에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달은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 · GATT)의 예외사항으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분야다. 이에 ‘가트 체제’를 확대 계승한 세계무역기구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을 대상으로만 정부조달 영역에서도 자유무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3월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사급 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1면 좌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5일자 8면에 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 ② “선로 · 역사 · 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범위 민영화 가능”, ③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④ “철도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은 면허만 따면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은 사실이 아니고, 외교부의 초벌 영문(Management of conventional railroad facilities) 번역과정에서 ‘Management’를 ‘관리’가 아닌 ‘경영’으로 번역해서 발생한 오류고, 현재 ‘관리’로 수정 중에 있으며, ② WTO 조달협정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부품, 자재, 장비 조달 등 공공발주에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건설이 완료된 철도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③ 1997년 정부조달협정 시에는 한국철도공사(‘05년 출범)가 없었고, 철도운영과 철도건설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철도청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④ 관제권은 정부조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국가업무에 해당하므로 외국기업이 철도 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9월 25일자 8면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에서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과 “선로·역사·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범위 민영화 가능”, “철도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철도청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로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제 목 :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본 문 : 본지는 9월 25일자 8면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목으로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철도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 개정의결서 체결로 철도 경영권 개방 및 민영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외국자본이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운송 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997년 조달협정 체결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청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개정의결서의 초벌번역본에서 ‘Management’를 ‘관리’가 아닌 ‘경영’으로 잘못 해석해 철도 경영권이 조달대상으로 포함된 것처럼 오인된 것이며, 2012년 개정의결서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양허기관에서 제외되었던 철도시설공단을 다시 추가한 것일 뿐 개방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니고, 철도 관제권은 법률상 국가업무로 조달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10월 15일자부터 10월 17일자 사이에 <한겨레> 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체결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기고문을 2012년 10월 2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측은 해당 기고를 2012년 10월 26일까지 오피니언면에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0. 1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8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5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유혹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광주조정72·7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축구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인 등에 접대 및 로비를 하고 자질 논란이 있는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교내 운영위원회에 유혹접대를 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축구부 감독 선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코치 임용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보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향후 학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남매일 : 『'자질 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13면)

내 용 :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 A초등학교가 축구선수와 학부모에게 폭언과 코치를 폭행하는 등 불성실한 지도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축구부 감독의 해임 요구를 수차례 묵살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정치권 언론인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입막음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광산구 A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올 2월 공석이 된 축구부 감독에 박모 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축구부 감독으로서 부도덕하고 자질이 없어 어린 선수들의 장래가 어둡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 선임을 약속했으나 타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박모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감독의 인척이 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어 선임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은 축구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자질 논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감독 부임 후 어린 선수들에게 폭언과 어깨와 등을 손으로 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6학년 Y학생은 이 충격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현재 운동을 그만 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에게 ‘아줌마 더 이상 할...’라고 폭언하고 김모 코치를 폭행해 광산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감독 선임 이후 학부모와 대화 단절로 감독 따로 축구부 따로 움직이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돼 오다가 올해 대교 눈높이 광주지역 주말리그와 화랑대기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합당시 어린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도 게을리 하고 학부모에게는 응원을 못하게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이면에는 해당 교장이 학부모운영위원 등에게 유혹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호남매일신문 지역 1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산 A초교 학교장 축구부 감독 해임요구 묵살 및 로비활동’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또는 ‘광산 A초교 학교장 축구부 감독 해임요구 묵살 및 로비활동’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지역 13면에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말썽”이라는 제목으로
1) 특히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언론인·학부모 운영위원 등에게 입막음용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

러운 일을 저질러 그만 둔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3)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이런 이면에는 해당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유흥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 5)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교육청·시의회·언론에 확인한 결과, 1) 해당학교장이 여론무마를 위한 정치권·언론인·학부모 운영위원에게 유흥접대를 했다는 것, 2)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3) 학교 측에서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것, 4)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5) 이런 이면에는 해당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유흥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는 것, 6)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관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감독이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하여 5년 자격정지를 당하자 축구부 학부모 간담회에서 모 축구부 학부모는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학교가 축구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임시켰다고 언성을 높였으며, 학교장 직권으로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체육부장으로부터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의해 선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학교는 광주시축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고, 광주시축구협회에서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후보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자 면접 당일 10여 명의 축구부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추천된 3명의 후보 외에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추천에서 제외된 후보를 면접하여 감독으로 뽑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추천된 후보 3명을 면접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안된다고 하자 다시 3명 후보 모두를 동점으로 처리하여 감독을 뽑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면접장에 참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면접 후에는 다시 교장실에 와서 3명의 후보에서 선임된 후보를 감독으로 계약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선임된 후보를 승인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도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2012. 01. 10.자로 감독승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축구부 학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계속적으로 감독승인 철회를 요청하자 감독승인 철회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10여 일간의 여유를 주었고, 다시 지도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2012. 01. 30.자로 재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에서는 감독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

다.

이후 끊임없이 학교에 감독으로서 부적절하므로 감독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하여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학교장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에 신입감독 해임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감독해임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감독 역할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부 학부모들은 계속적으로 감독으로서 부도덕하고 자질이 부족하니 신입 감독을 해임하고,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학교장이 축구협회와 협력하여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 주지 않았다’, ‘정치권 · 언론인 ·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유흥접대로 포섭하여 축구부 학부모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제보하여 학교장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축구부 학부모들이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광주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한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해당 학교장을 언론으로부터 탄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13면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 언론인 · 학부모 운영위원 등에게 입막음용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며,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그만 둔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언론인 등에 접대 및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축구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으며, 축구부 감독 선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코치 임용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호남매일 13면 우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2. 10.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호남매일 :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13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6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 건 : 2012서울중재43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전)부산시장인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보도 이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알리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2 서울조정1400)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정정보도하도록 중재결정을 하였다.

중재대상보도

월간조선 :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382~399면)

내 용 : ○○ ‘정치인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민의 눈길이 연일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 쏠리던 1997년 4월 16일. 아침 일찍 김○○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를 걸어 왔다. 내게는 대학 및 검찰 선배인 그는 일찍이 검사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경력의 인물이다. 그 무렵엔 여당인 신한국당의 전국구 승계후보 상위 순번에 올라 있기도 했다.

– 심 부장, 그래 얼마나 바빠요. 나 김○○이요.

“선배님께서 웬일이십니까.”

– 이거 뭐 아무 것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검사검사 오늘 얼굴이나 좀 볼까 해서….

“저도 뵙고 싶지만 원체 쫓겨서, 괜찮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셔도….”

–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김 의장 일이라….

김○○ 국회의장의 사자(使者)로 연락을 해 온 것이었다. 솔깃했다. 당시 나와 휘하 검사들은 도대체 김 의장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터였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의 수장(首長)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국회의장을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세상 사람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불러 놓고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은 비난과 비웃음을 뒤집어줄 수밖에 없다. 당장 소환이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우 문제부터 이래저래 신중해야 한다. 어떤 대목에서든 검찰이 헛발을 디디거나 실수라도 한다면…, 안 그래도 이미 ○○ 수사로 검찰에 물리면서 잔뜩 독이 올라 있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뭘로 보는 거냐, 나라의 수치다, 국회 모독” 운운하며 여지없이 검찰을 되받아칠 것이었다.

국회의장 수사의 어려움

더욱이 김 의장은 당시 김○○ 신한국당 고문 등과 더불어 정계의 ‘어른’이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절친한 지기(知己)이기도 했다. 여기서 하필이면 4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우리 국회가 국제의회 연맹(IPU) 총회를 개최한 터였다. 그처럼 중대한 국제행사를 치르자마자 주최국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범법(犯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나라 체면이 어찌 될지는 뻔한 노릇이었다.

특히 우리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던 점은 김 의장이 ○○로부터(그것이 정치후원금이든 뇌물이든) 돈을 받은 것이 그가 재야(在野) 인사이던 1992년 3월이란 점이였다. 그러니 설사 뇌물을 받았다 해도 이미 그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다. 앞서 4월 10일 내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33명의 정치인 가운데는 김 의장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일단 명단에 올라 있으니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의장실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건네 놓은 상태였다. 그레 놓고 시간은 확실히 지나가는데 과연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솔직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이었다. 그런 터에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 얼핏 반가운 마음도 살짝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 변호사에게 “얼른 오시라” 할 수는 없었다. 내 방문 앞에는 자기들 표현으로 ‘뻔치기’라 해서 기자들이 24시간 말뚝처럼 서 있는 상황. 그러면서 내가 총장실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붙는다. 그런 터에 김 변호사가, 그것도 정치인 수사가 한창이던 민감한 때 나를 찾아온다? 기자들이 그 정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일단 오후 3시에 밖에서 뵙자”고 했다.

약속시간이 되어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방을 나와서는 기자들 눈에 띄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 미리 약속한 대로 여직원이 내 옷을 들고 그리로 왔다. 그러고는 시커멓게 유리가 코팅된 내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와 약속장소인 인근 팔레스호텔로 향했다. 오후 3시, 호텔 3층의 칵테일 바(Cocktail bar)에 들어서는데 저 앞에 평소 낮익은 기자가 앉아 있었다. 다행히 기자는 나를 못 보았다.

아이고 놀라라, 획 뒤돌아 호텔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약속을 잡았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 앞 길가에 내 차를 세웠고 얼마 뒤 김 변호사가 그 차에 올라탔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뒷좌석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

– 의장께서 검찰이 정말 큰일을 한다고 꼭 인사를 전해 달랍니다. 그런데 의장 본인은 ○○ 쪽에서 뭘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언제였는지 한일 국회의원들 모임 있을 때 어디선가 2,000만 원을 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받았는지 말았는지 기억이 어렵춧하다시고…. 뭐 어디서든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검찰에 나가는 건 무리가 있고, 다른 데서 조사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시고….”

이 2,000만 원 운운하는 사실은 나로서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오랜 정치생활 동안 후원금 등 이래저래 받은 봉투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기억에 없는 건지는 모를 일이다. 좌우시간 저쪽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만큼 우리 검찰 수사팀의 보안 상황은 철통 같았다.

“○○ 정○○ 쪽에서 5,0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한 번 조사받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겁니다. 조사받는 장소야 의장님 생각대로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서 꼭 한 가지 해 주실 게 있습니다.”

– 5,000만 원이요? 이건 생소한 이야기 같은데, 뭐 어쨌든….

“정○○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자술서(自述書)를 먼저 좀 써 주셔야겠습니다.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뻔한 사실을 놓고 왈가왈부해서 의장께서도 피곤하시면 안 될 테니까요.”

– 그러면 뭐 형식적인 조사 절차가 아니라, 아예 시인하라는 얘긴데…. 그건 의장께서도 전혀 원하지 않으실 게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나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간 ‘정○○ 진술조서’를 김 변호사에게 내 보였다. 물론 거기에는 정○○ 총회장이 김 의장에게 5,000만 원을,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정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準품통급 정치인 5명 기소

○○그룹 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 중이던 국민의회의 권○○ 의원이 1997년 2월 17일 구속적부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 돈을 준 쪽에서 이렇게 명백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쪽에서도 시인하지 않으면 피차 더 골치만 아플 겁니다. (시인하는)자술서를 쓰지 않고 (의장께서) 돈 받은 적 없다고 끝내 부인하시면 검찰로서는 언론의 몰매에 피곤하고 해서 부득이 의장님을 이번에는 검찰청으로 정식 소환해 결국 씨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었는지 김 변호사는 종종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쪽에서 예의

자술서를 써서 검찰에 보내 왔다. 그것을 들고 박○○ 중수1과장과 홍○○ 검사가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가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는 조용히 마무리됐다. 국회의장의 ○○ 5,000만 원 수수 사실을 확인한 대목은, 앞서 4월 10일 시작된 ○○ 33명 정치인리스트 수사의 절정이었다.

이제야 밝히는 것이지만, ○○ 정치인리스트 수사는 실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앞서 ○○ 제1차 수사팀은 ○○의 부도발표 24일 만에 후닥닥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때 기소된 9명 가운데 정계 인사는 넓게 보아 김○○·홍○○·황○○·정○○·권○○ 의원 등이었다. 몸통까지는 아니라도 ‘준(準)몸통’은 될 만한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단지 다섯 명만을—국가를 뒤흔든 5조 원 대 사건에서—법정에 세운 것이다. 과연 누가 이 같은 처사를 납득할 수 있었을까.

민심은 들끓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 정치인 혹은 정치권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내가 2차 수사를 맡은 후에도 여론은 끊임없이 ‘보다 더 큰 몸통을 밝혀 내라’며 김○○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가는 언론보도에 속았어

이상수 의원이 1997년 4월 7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정○○ ○○ 총회장을 추궁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정○○리스트 수사 방침’ ‘○○ 정치인 50여 명 수사 임박’ ‘대가성 드러나면 사법처리’ 등등 하나같이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소스로 한 보도들을 내놓았다. 심지어 돈 받은 정치인이 누구누구 운운하며 이니셜이나 실명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엉뚱하게 거명되어 피해를 보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검찰이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내놓지 않자 추측성, 소설성 기사들이 난무한 것이다.

그런 기사들을 매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던 나와 수사팀은 착잡했다. 사실 검찰이 당장 데려다 조사해야 할 정치인의 이름과 대충의 혐의는 일찌감치 나와 있었다. 앞서 1차 수사 때 정 총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미 다 털어놓은 터였다. 전·현직 통틀어 모두 33명, 현역 의원만 20명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이 머뭇거린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솔직히 검찰로서는 정치인들에게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고 사법처리해야 하는 수사가 가장 부담스럽다. 어찌어찌 돈을 준 쪽의 진술을 받아낸다 해도 받은 쪽에서는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런 사건에는 십중팔구 증거도 없다. 나중에 실제로 법원에서 정치자금 쪽으로 결론이 나면 설사 돈이 오갔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시 정치자금규제법에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 한두 명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다. 수사결과가 흐지부지 ‘빈

손'일 때 비난과 비웃음은 여느 사건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한두 명에 대한 수사도 그러한데 정치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설사 천지를 뒤엎는 검사가 있다 해도 그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말로 둘러대자면, ○○ 정치인 수사를 놓고 검찰로서는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與野 共同戰線 형성, 검찰에 반발

둘째,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이 자칫 여야 간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했다. 누구누구가 돈을 받았더라—그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설사 그것이 처벌대상 아닌 정치자금이든 혹은 실제로 범죄성 뇌물이든 간에 여지없이 상대방의 정치적 공격 호재가 될 것이었다.

세 번째로,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었는데,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이에 부응(?)하려는 검찰 쪽 분위기다. 당장 검찰 상부의 분위기가 “(딱 떨어지는 증거 없이) 정○○의 입(주장)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규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에서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범죄 구성요건이 안된다”며 정치인 수사를 반대한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과연 순수한 정치자금이나 혹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하는 것은 조사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 윗선은 아예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어떤 이유에선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막았다.

당시 그것은 검찰 수뇌부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청와대는 물론 집권여당인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까지, 정치인에 대한 공개수사를 원치 않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었다. 음(陰)으로 양(陽)으로 내게도 그런 기류가 확연히 전달됐다.

표면상 이유야 “정치자금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말할 것도 없이 ○○ 정치인리스트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에 심각한 타격과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사를 반대하는 ‘그들’은 그저 1차 수사 때처럼 어떻게든 2차 수사도 조기 종결하고 정치인이든 김현철씨든 일단 사법처리 불발 또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끝내는 것이 최선책이란 분위기였다.

총장, 정치인 수사에 소극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정 총회장의 진술(정확하게는 자술 메모지)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으로서는 상부에 정치인 수사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나 역시 중수부장이 된 뒤 한두 차례 정치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슬쩍 피력했으나 다만 ‘절대불가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검찰 내부에서뿐 아니라 ‘바깥’에 대해서도 김○○ 총장의 그런 의지는 확고했다. 4월 4일 국회 ○ ○ 특별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 때였다.

이날 의원들은 김 총장을 상대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묻는 한편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정○○리스트’도 공개하라고 몰아붙이듯 요구했다. 검찰이 과연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칼끝을 마주보고 있는 당사자인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 수사를 막고 있는 자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억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이 김 총장으로서의 적잖이 야속하기도 했을 터였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정 총회장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봐서 내용이 맞는 사람만 공개하되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알듯 모를듯한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확인 작업을 거쳐 옳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겠지만, 이 경우라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굳이 덧붙였다.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이 없다는 뜻을 예둘러 말한 것이었다.

이처럼 총장의 뜻이 너무도 명백한 이상 수사팀은 속수무책 애만 풀이고 있었다. 성역 없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대검 7층의 수사팀과 수사 확대는 곤란하다는 8층 수뇌부의 입장이 맞서 정치인 수사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은 또 다시 나와 검찰을 도왔다. 뜻밖에도 다름 아닌 정 총회장이 정치인 수사의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쓴 채 내내 입을 봉하고 있던 정 총회장이 4월 7일 열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정○○ 총회장의 고마운(?) 도발

김○○ 의원이 1997년 4월 12일 ○○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그 발단은 우연한 것이었다. 이날 신한국당 맹○○ 의원의 질의가 계기였다. 맹 의원은 정 총회장을 향해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라며 역(逆)질문을 던졌다.

아마 정 총회장이 이전까지 노상 그랬던 것처럼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거나 “모른다”라거나 침묵하는 식으로 결국 답변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 역질문을 통해 자기 당 실세이던 김○○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대변하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졌다. 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총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연합의 김○○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김○○ 의원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묻지 않은 이들의 이름까지 터뜨렸다.

김○○·김○○·김○○.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각 당의 실세 중 실세들이었다. 검찰에 의해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씨)까지 구속된 상황에, 그렇게 몰릴 대로 몰렸는데 아무도 손을 써 주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정 총회장이 섭섭함의 역공(?)을 취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에 어서 정치권에서 액션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을까.

그 속내가 무엇이든 각 당의 얼굴 격인 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정 총회장의 이날 진술은 당장 언론의 톱기사가 됐다. 세 명의 김 의원은 하나같이 펄쩍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내 사무실에 앉아 TV로 청문회를 지켜보던 나는 정 총회장의 폭탄발언 장면에 깜짝 놀랐다. “저자가 뭔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싶었다. 즉시 직원들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정 총회장을 구치소 자기 방에 돌려보내지 말고 곧바로 검찰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오늘 당장 정 총회장을 털어야 한다. 마음이 급했다.

정○○, 검찰조사 후 다시 입을 닫아

정○○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중 처음으로 김○○ 자민련 사무총장이 1997년 4월 11일 저녁 대검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사실 그때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정치인 관련 수사자료는 정 총회장이 1차 수사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술한 내용, 곧 간단한 메모 형식의 ‘자술서’였다. 그것만 가지고는 법정증거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정 총회장이 심경변화를 보인 오늘 무리가 되더라도 ‘지체없이 진술조서를 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입을 닫아 버릴지 모른다’고 직감했던 것이다.

이윽고 정 총회장을 검찰로 데려온 뒤 그날 밤을 새워 집중 심문을 해 나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심경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심문을 맡은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에게서는 간간이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이 나타났다. “국회 의원들은 갈만 안 들었지 내게는 다 강도다. 나는 국회의원에게도 뜯기고, 여기저기에 뜯기고, 언론에도 뜯기기만 한다”고 푸념했다. 또 “검사님도 이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을 거요. 돈 없이 지역구 관리가 되나. 결국 나한테 대통령 (매달려야)하지”라고 여유까지 부렸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갈 만큼, 딱딱하기는커녕 화기애애(?)하다 싶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조사가 진행됐다. 그는 이날 검사의 질문에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 총회장은 이튿날 새벽까지 자신이 돈을 준 33명의 정치인들과 액수, 심지어 돈을 주고받을 때 정황까지도 진술했다.

서둘러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그날 나의 직감은 들어맞았다. 그렇게 밤새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정 총회장은—바로 그날 낮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몸이 아파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여야 정치 실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실어증(失語症)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장은 놔두고 정치인 수사 합시다”

이날 하룻밤 동안의 조사로 우리 수사팀은 ○○ 리스트에 올라 있던 정치인들의 혐의에 대해 90% 이상 수사를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 훨씬 전에 우리는 이미

수사에서 이겨 놓고 있었다. 소위 화투판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켜진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수사팀 전원에게 정 총회장을 조사한 사실, 또 그것을 통해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공식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아직 전쟁, 아니 전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 총회장의 청문회 돌발발언으로 우리 수사팀은 두 가지 호재를 얻은 셈이 됐다. 하나는 ○○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그것도 법적 증거력을 가진 진술조서로 확보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검찰 외곽에서 정치인 수사에 대한 여론을 들끓게 했다. 당연히 그 같은 여론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 수사를 반대하던 수뇌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 관련 은행장들의 배임 수사 여부를 놓고 내가 김 총장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4월 8일 아침에 벌어진 것이다. 은행장들 수사마저 머뭇거리던 총장에게 “사표를 내라”며 격앙하고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은행장 수사도 안 되고 정치인 수사도 안 된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오후에 대검 차장이 부른다. 용건은 간단하고 선명했다. “은행장들 배임 문제 수사는 일단 보류하고 대신 정치인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김 총장과 얘기가 됐다”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 정치인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다. 안에서는 내가 은행장들을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김 총장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평소 후덕한 성품의 김 총장으로서 그런 상황이 몹시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아마도 정치인리스트 공개는 그런 곤혹스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김 총장이 어쩔 수 없이 꺼내 든 카드가 아니었을까.

김 총장, “정치인 형사처벌 대상 없다”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로서는 솔깃했다. 정치인리스트 공개는 김 총장과 최 차장이 꺼낸 카드로는 꽤 큰 것이었고 내가 바라기도 하던 것이었다. 생각해 보겠노라, 나는 차장실을 되돌아 나왔다.

이튿날인 4월 9일 아침 정례회의, 여전히 서먹서먹한 나와 김 총장 사이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대검 차장이 어제 운을 뗐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리스트를 공개하면 아무래도 그 파장이 엄청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그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아 봅시다.”

최 차장의 말을 받아 김 총장이 덧붙였다.

“아무래도 은행장들 쪽 문제는 심 부장이 이해를 좀 해서…, 일단은 연기하는 것으로 좀 하자고.”

역시 김 총장에게는 정치인 수사보다는 어떻게든 은행장들 배임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좀 더 급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지금이다 싶어 내가 그 말꼬리를 잡아챘다.

— 총장님 생각이 정 그러시면 (정치인)리스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겠습니다.

그런 내 얘기가 ‘은행장 수사를 보류하겠다’는 대답으로 들렸는지 김 총장은 비로소 안도한다는 표

정으로 “리스트? 그쪽 수사야 뭐...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 보지 뭐”라고 끝을 얼버무렸다. 확답은 아니었다.

나는 정치인 수사를 얼른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10시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을 통해 “○○ 정치인리스트에 올라 있는 33명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튿날 김 총장은 또다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내놨다. 나와 함께 자리한 한 비공식 석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공개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사처벌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자금법 아닌 뇌물수수 쪽이 없게 하라”는 지침(指針)을 내놓은 것이다.

○○ 정치인리스트, 거기 올라 있는 33명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안팎의 역풍을 뚫고 달려야 했다. 공개수사 방침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부연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소환

1997년 6월 30일 열린 ○○ 2차공판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국회의원의 고문이 입정하고 있다.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33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조사한다. 가급적 전원 소환할 것이며 조사장소는 대검 중수부 조사실이 원칙이다. 해당자들은 결국 검찰(대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다만 정치인 자신이 사생활 보호나 인권, 명예 등의 이유로 공개수사를 원치 않는다면 일일이 언론에 비치게는 안 하겠다. 기자들이 모르게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라 해도 그 결과나 내용은 숨기지 않고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소속정당별 인원수, 현직 국회의원 여부, 자치단체장 여부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덧붙여 발표했다. 수사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중간에 바뀌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운 것이었다.

그러고는 당장 이튿날부터 정치인들의 검찰 소환 및 조사가 시작됐다. 정 총회장이 공개 거명한 김○○·김○○·김○○ 의원을 가장 먼저 불렀다. 상대적으로 거물급인 이들 세 사람부터 불러들인 것은 그 어떤 권력이라 해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단호한 의지와 기세를 보이려는 것이었다. 이어 박○○·박○○·나○○·서○○·김○○·권○○ 의원 등 중진들, 그리고 원로 정치인인 이○○ 민주당 상임고문도 검찰에 들어왔다. 앞서 본 것처럼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거쳐 공판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정 총회장의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진술’을 통해 우리 수사팀은 이미 소환대상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거의 다 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과 대면한 뒤 조사 과정 자체는 쉽지 않았다. 검찰이 혐의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소환된 정치인이 “그렇다”고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단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조사실에서는 검사와 정치인 사이에 치열한 기(氣) 싸움과 두뇌 대결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정치인 쪽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돈이 오간 정황은 실로 구체적이었다. 정 총회장이 그만큼 세세하게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 준 덕분이었다.

가령 ▲누구는 호텔 몇 층 객실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 ▲누구는 그날 돈을 받고 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누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과박스로 돈을 담아 실어 주었다 ▲누구는 사람을 시켜서 해당 의원의 집에 직접 돈 상자를 배달해 주었다는 식으로, 잡아떼려야 뗄 수 없는 정황들이 잘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의 정치자금 제공기준

나중에 수사결과를 뜯어보면, ○○ 쪽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넬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였다. 여당 실세들에게는 5,000만 원(1997년 당시 5,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실무 권력을 쥐고 있는 장관급 실세에게는 1억 또는 2억 원을 주었다. 야당 쪽에 대해서는 당시 ‘DJ계의 말형’으로 통하던 권○○ 의원(5,000만 원) 외에는 아무리 실세라 해도 최대 3,000만 원을 주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네거티브한(자신을 흑박지르거나 협박하는) 정치인에게는 과징죄를 적용(?)해 오히려 액수가 더 적게 1,000만 원,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지못해 2,000만 원을 건넸다.

흥미로운 것은 소환대상이 된 정치인들의 거짓말 또는 변명 행태였다. 어떤 이들은 소환되기 전 신문에 이름이 나면 일단 음해다, 음모다 하면서 반발하거나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런 이들 일수록 검찰조사 후 귀가할 때는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이라며 군색한 변명을 내놓기 일쑤였다.

어떤 정치인은 “내가 언제 ‘○○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고 했느냐. ‘정○○로부터 안 받았다’고 했지”라고 해서 빈축을 샀다. 모 의원은 “(정치생활) 30년 간 정도를 걸어온 나의 명예나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설을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의 최측근이 ○○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할 말이 없게도 됐다.

당초 내가 천명했던 그대로 33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달리고 달려 5월 중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인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관과 총장이 중수부장 통제 못한다”

정치인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수사의 사령관으로서 철저하게 두 가지, 서로 연결된 원칙을 고수했다. 하나는 수사내용의 보안유지, 다른 하나는 외압(外壓)의 차단이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정치인 수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소환 대상자의 이름 혹은 혐의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해당 정치인은 당연히 면밀한 ‘준비와

연습'을 하고 검찰조사에 응할 것이다. 수사대상자가 이쪽에서 쥐고 있는 패를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 들어오면 수사는 정말 어려워진다. 정치인 공개수사를 발표할 때, 그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33명의 명단을 결코 한꺼번에 밝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언제 검찰에 소환될 것인지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날 소환할 정치인은 바로 그날 아침 언론 브리핑 때 공개했다.

검찰총장과 의 아침회의 때 공식 수사보고 외에는 청와대든 국회든 그 어느 곳에도 수사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사 어떤 기자가 소환될 정치인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어디선가 미리 파악해서 질문을 해 와도 나는 결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4월 10일부터 5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정치는 거의 마비되 다시피 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떤 쪽으로 될 것인지, 어떤 사태를 몰고 올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도 '향후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청와대 수석들이 참모회의에서 검찰과 중수부장에 대해 성토 일색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정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난이 나온다" 등등 불편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지인 등 '안테나'를 통해 속속 전해졌다.

장관이든 총장이든 혹은 나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봤을지도 모를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러나 당시 '○○ 몸통'을 겨냥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사팀으로서 다른 쪽 사정에까지는 돌릴 겨를이 없었다.

“소환대상자 안 만난다”

내가 그토록 보안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외압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정치인 한 사람을 수사한대도 모쳐 혹은 도처에서 '연락'이 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30여 명의 정치인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외압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전화로 직접,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통해, 기사를 통해, 검찰 내부인사를 통해 등등, 그 경로도 다양하다. 그러나 누가 됐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든 나는 외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려 했다.

당장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들과 얼굴조차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정당의 고위인사, 대통령 측근, 정치권 실세 등 거물급 인사들은 그 지위나 '얼굴'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법조계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아예 그들과 대면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거물 정치인들이 검찰에 들어오기 전 그들을 대신한 몇몇 변호사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와 “누구누구는 심 부장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터이니 친분도 좀 쌓아 둘 겸 중수부장실에서 먼저 면담하고 차라도 한 잔 하는 등 예우를 갖춰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부탁마저도 분명히 거절했다.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있고 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소환대상자는 중수부장실을 거치거나 중수부장이 따로 만나지 않겠다” 선언하고 “소환대상자는 예외 없이 검찰청사 현관에서 조사실로 곧바로 모실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이 맡겨 준 지금 중수부장이 검사의 끝’이라 믿던 나는 ‘앞날’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모시던 검찰총장 그리고 나와 절친한 검사 동기가 인간적인 부락을 했을 때도 나는 외압 차단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 부산시장이 지역개발 건과 관련해 2억 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돈을 받던 당시 문 시장은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事前收賄)에 해당했다. 게다가 그때는 마침 부산에서 중대한 국제 체육행사인 동아시아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문 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할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배경으로 먼저 김○○ 부산지검장이 “부산 사람들의 현지 의견”이라면서 불구속 이야기를 전해 왔다. 사법시험 동기의 부탁이었지만 나는 “액수로 보나 죄질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거꾸로 그를 설득했다. 문 시장과 절친한 김 총장도 내게 대놓고 불구속 의견을 냈다.

“심 부장, 문 시장하고 내가 고등학교 동기인 거 알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것도?”

–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도...(구속할 거냐?)”

거듭 묻는 김 총장에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겉으로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 그 미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시장은 결국 불구속기소됐다.

메모지 유출 사건

이처럼 보안유지다, 외압차단이다 하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도 어쩔 수 없이 실수나 허점은 생겨난다. 정치인리스트 수사 와중에 터져 나온 ‘메모지 유출’ 사건이 그것이다.

황장엽 북한 당비서가 서울로 들어오던 4월 18일 저녁 SBS-TV의 메인 뉴스 시간에 ‘○○ 수사의 축소를 종용하는 외압 메모지가 나왔다’는 소식이 특종 보도됐다. SBS 검찰 출입기자가 입수한 그 메모지에는 ‘전(前) 경제수석과 은행장들 사법처리는 안 된다. 은행장들의 경우 불구속 입건도 안 된다. 검찰도 결국 국가의 일부 아니냐. 뜻대로 하려면 검찰 수뇌부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하라. 사표 내고 혼자 스타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항용 말로만 떠돌다 사그라지기 십상인 외압의 실체가 그렇게 ‘현물’과 함께 뚜렷이 나타난 것은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 검찰의 ○○ 수사에 대해 모처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

연 누가, 왜 이 같은 압력을 가했는가, 또 이 메모가 어디서 나왔는가 등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 메모의 노출 및 보도로 인해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검찰, 그중에서도 우리 수사팀이었다.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예의 메모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또 그것이 검찰에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꾸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우선 그 진상 혹은 전말은 이런 것이었다.

앞서 (제2편에서)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이 메모는 우리 중수부의 김○○ 수사기획관이 청와대 문○○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내가 ○○ 은행장들의 배임 수사를 밀어붙이던 4월 7일 저녁, 리츠 호텔에서 문 수석과 최○○ 법무부장관, 김 총장과 김 수사기획관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여기에 나 대신 참석했던 김 수사기획관이 차후 나에게 보고하기 위해 “은행장들 수사를 하지 말라”는 문 수석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메모한 것이었다. 마침 수첩을 두고 간 터여서 김 수사기획관은 그 자리에 있던 손바닥보다 작은 메모지에 일단 그 내용을 적어야 했었다.

“언론플레이 하나”

이후 김 수사기획관은 나에게 메모를 보여주고는 자기 방 문서분쇄기에 그것을 넣어 파기하려 했다. 그러나 종이가 원체 작아서 파쇄(破碎)되지 않았고, 김 수사기획관은 그것을 일단 자기 책상 위의 수첩 밑에 끼워 두고는 잠깐 외출했다. 추측컨대 아마 그 사이에 SBS 기자가 그 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메모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던 김 수사기획관은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다 말고는 “어, 어 저거 내 글씨인데…”라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고는 내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것이 유출된 경위나 형식이야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SBS가 보도한 것처럼 ‘○○ 수사의 축소를 종용한 외압’이었다.

당장 이튿날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강직한 수사도 좋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 언론플레이를 해야 하나냐”는 의혹과 원망 섞인 소리들이 들려왔다. 언론에 대한 아침 브리핑 때도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집중 요구했다. 나는 “정치적 외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외압이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결과를 보면 그런 외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대응했다.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뒤집어 보면 이 사건은 오히려 청와대의 외압조차도 내가 얼마나 단호히 차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정치인 수사가 가져온 두 개의 反轉

돌이켜 보면, 정치인리스트 수사를 통해 검찰은 두 가지 큰 소득이랄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1차 수사 이후 줄곧 검찰을 비난하던 민심이 돌아섰다. 무려 30여 명의 정치인들, 그 이름만으로도 당대 권력을 상징하던 인물들이 검찰에 하나하나 소환되는 생생한 중계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검찰이 뭔가 하는구나’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 수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검찰을 독려하며 따뜻한 인사치레를 담은 편지들이 우리 대검 중수부에 속속 도착했다. 한 편지에는 ‘소환된 정치인들이 ○○에서 얼마얼마를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우리 검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쓰여 있었다. 불과 한 달여 전 ‘마피아 집단’이라고 성토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란 칭찬을 듣게 된 것이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검찰은 실질적인 업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집권세력 내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었다. 정치인리스 수사 이전,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국정원 등 힘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한결같이 ‘김○○ 사법 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33명의 정치인 수사로 적잖은 이들이 사법처리되거나 혹은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자 ‘김○○ 때문에 아까운 정치인들 다 죽는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여기저기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한 큐(김○○)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인리스 수사를 마무리한 우리 수사팀은 이제 보다 크고 강력한, 또 다른 ‘몸통’을 향해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월간 조선 11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첫 면(연재가 없을 경우에는 목차 첫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월간 조선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 사건(3)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의 제목 중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와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월간 조선은 지난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라는 제목하에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 부산시장의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2억 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중략)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이후 ○○ 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취에 해당했다. (후략)”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부산시장의 위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울지법 97고합436, 서울고법 98노193, 대법원 99도 2569)에 따르면 문○○ 전 부산시장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의 목차에 <별지> 정정보도문의 제목(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을 []안에 표시해 게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300페이지~400페이지 사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 사건”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와 같게 한다.

이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중 “국민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부산시장 출마 당시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 1999년 9월 7일 대법원이 신청인의 ○○건설 정○○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가 밝혀진 바, 신청

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 판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사건은 중재대상 기사의 보도된 날이 무죄판결을 받은 날 이후이므로 추후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산시장 출마 당시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 대의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대법원 99도2569, 1999. 9. 7. 선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중재대상 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에게 신청인의 무혐의 판결을 알려 명예회복을 도울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 대법원 판결문, 양 당사자의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중재결정한다.

2012. 10. 15.

<별지>

1. 제 목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2. 본 문 :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대를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법원은 문○○ 전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건

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내 용 : <중재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27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572 · 1573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피신청인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제2대 원장이 취임한 후 주요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간부를 파면하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등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원장 취임과 주요 간부 퇴사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연구는 차질없이 진행중이고, 연구원의 운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신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코메디닷컴 : 『주요 간부 출사표... 보건연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6일자)

내 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출범 3년만에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월 26일 이○○(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 보직자들이 줄줄이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먼저 떠난 것은 배○○ 임상성과분석실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난 1월말 이 원장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원장은 국가가 임상지침 개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온 장본인”이라며 “취임 직후 본인의 보건연 운영 방침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1위 후보에게 상당한 점수차로 2위를 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낙점한 인물”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4월에는 변○○ 경영지원실장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6월에는 이○○ 의료기술분석실장이 사직했다. 그 후임인 권○○실장은 2개월만에 경북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이 일하고 있다.

지난 8월말엔 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마저도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했다. 그는 허○○ 초대 원장과 함께 보건연 설립과 기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근거중심 의학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이 전 본부장은 “이 원장이 취임할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다수의 무기 계약직 직원들이 2년이라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채웠음에도 보건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줄줄이 그만뒀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문가는 “보건연은 근거중심 의학 발전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된 기관”이라며 “주요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니 본연의 연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장 취임 이후 연구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연측은 “이 원장의 취임과 주요 연구 책임자들의 잇단 사퇴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각종 연구 과제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산 관리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으로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를 제대로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데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Round-table Conference’ (4월 22일)이 유일했었다. 이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원은 지난 8월 23, 24일 11건의 연구보고서를 무더기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연구실적은 모두 지난해 완료된 것들이었다. 올해 수행된 연구의 보고서는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 전 임상성과분석실장은 “통상 연구보고서는 최종 수정일로부터 짧게는 한 달, 최대 두 달 이내에 공개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올해 완료된 연구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보건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보건연은 황○○ 전 경영기획팀장을 파면했으나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 관계자는 “황 팀장이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고 법인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정했다. 보건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황 팀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보건연은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인 황 팀장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코메디닷컴(<http://www.komedi.com>)의 홈페이지 뉴스홈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주요 간부 줄사표...보건연에 무슨 일이? - 실장·본부장들 대거 사임으로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사에서는 2012년 9월 26일 기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제2대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주요 보직자들이 연이어 사직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실제 올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단 한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비자발적 퇴직하였고, 올해 5월 파면된 황○○ 경영기획팀장의 해고 배경에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퇴직한 주요보직자라 보도된 6인 중 3인이 배임·횡령 등의 비위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파면’ 등 불명예퇴직하였고, 나머지는 보직자가 아니거나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올해 수행한 연구결과는 내년에 발표되며 연구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원장의 취임 이후 퇴직한 직원들로 인해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의료기술분석실장의 보직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이 일하고 있다”, “다수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퇴직 하였다”, “연구원이 파면된 황○○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황○○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문: 코메디닷컴은 지난 9월 26일 “주요간부 줄사표... 보건연 무슨 일이” 제목의 보도에서 이 ○○ 2대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취임한 후 주요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비위 간부 파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등과 관련한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황○○ 간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회사를 그만둔 보직자 중 일부는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사했고, 나머지는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이며, 현재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결과는 내년 초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직은 공채를 통해 정규 채용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코리아메디케어는 2012년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코메디닷컴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 (주)코리아 메디케어는 제2항과 같이 보도를 이행한 후 계약관계를 맺고있는 포털사에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전송 조치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 교수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삭제한다.

6.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1. 12.

조정정립사항 이행결과

코메디닷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치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8

신청인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인 붕어찜축제를 전시성 예산낭비 및 지자체장의 표심모으기 행사라고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충북조정45·46, 2012충북조정47·48(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붕어마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역의 붕어찜 축제가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는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이고,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9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충청투데이 : 『○○ 붕어찜축제 전시·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내 용 : ○○군의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고향마을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군은 오는 20일 ○○면 한국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붕어마을 붕어찜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4회 붕어찜축제'를 개최한다.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축제는 공식행사과 경연대회·부대행사, 상설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상설행사로는 붕어찜요리 시연과 1,000명 분의 무료 시식회가 마련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듯 붕어찜 요리에 들어가는 붕어가 ○○저수지에서 잡은 붕어가 아닌 전량 외지에서 구입해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붕어마을붕어찜축제위원회에 따르면 붕어찜 요리에 들어가는 붕어는 올해도 전량 인근 양식장에서 구입한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나오는 붕어는 없다”며 “지난해 수준의 물량을 인근 양식장에서 구입한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붕어마을 음식점들은 손님이 없어 울상인데 무슨 경로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고 있느냐”며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축제가 아니고 뭐냐”고 비아냥 거렸다.

주민 B씨는 “○○붕어마을을 홍보하고 농민수익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는 무료시식 행사를 지양하고 붕어마을 14개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토록 해야 한다”며 “이 마을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축제가 경쟁력있고 업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치러지고 있는 ○○붕어마을붕어찜축제가 무료시식회와 이벤트성 행사로 지적되고 있어 점검이 요구된다.

②

인터넷 충청투데이 : 『○○ 붕어찜 축제 전시 · 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충청투데이 충북 ○○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자치단체장 고향마을 표심 모으기 행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 붕어찜축제 전시 · 예산낭비”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 붕어찜 축제 전시 · 예산낭비”』 제목의 기사에서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며,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 찜을 제공,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축제이고, 또한 “○○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라며 허위사 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붕어마을은 ○○붕어찜축제는 전시·예산낭비성 행사나 자치단체장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로서,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지는 붕어가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전국에서 유명한 붕어 낚시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8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붕어찜축제 전시·예산낭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지난 10월 18일자 16면 “○○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제목의 기사에서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하여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는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붕어마을은 ○○붕어찜축제는 전시·예산낭비성 행사나 자치단체장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로서,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고, ○○지는 붕어가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전국에서 유명한 붕어 낚시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12년 11월 15일자 1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지 붕어 한 마리도…”)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인터넷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2. 11. 15. 09:00~11. 17. 09:00까지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활자크기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붕어찜 축제…”)과 같게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1.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①

충청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1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인터넷 충청투데이 : 『**[반론보도문]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9

신청인이 대중가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신청인이 표절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피고 김 모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09·1610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주)스타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샤방샤방’의 작곡자를 상대로 신청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전 하면서, ‘샤방샤방’ 작곡자와의 인터뷰 및 민사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일방 당사자 측의 입장만을 보도했으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결과,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스타뉴스 : (1)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내 용 : “비슷한 멜로디 하나도 없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29)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샤방샤방’을 만든 작곡자 김○○(24)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김○○은 지난 1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표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바로 비교해서 들어보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이 표절 논란이 휩싸인 것은 가수 진○○이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2008년 7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며 김○○과 박현빈의 소속사 ○○프로덕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다. 김○○은 진○○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까지 당했다.

진○○은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표절 논란에 휘말렸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저작권위원회의 판별을 통해 억울함을 벗었으면 좋겠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3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 자신이 정작 떼뻗하면 돈을 왜 안내겠느냐.

– 진○○은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 가사가 유사하다고 하더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이 비슷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 고소인 진○○과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았는지.

▶사실 고소를 당하기 전에 진○○씨로부터 먼저 연락을 왔다.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 서로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좋게 합의를 보자고 했다. 내가 어리고 만만하니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박현빈 씨가 SBS ‘강심장’에서 ‘샤방샤방’을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 내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고소를 하고 나서는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더라. 공동저작권자가 더 있는데 나만 고소했다. 딱 보아도 의도가 불순한지 알겠지 않은가.

–현재의 심경은.

▶대화 과정에서 정말 협박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병원도 갔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인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처음엔 나이도 어린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말 그냥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박현빈이나 ○○프로덕션하고는 통화를 했는지.

▶○○프로덕션하고는 건너서 접촉을 했는데 그쪽도 나와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

– 법적으로 맞대응 할 계획이 있는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 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

이 거론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빨리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고소만 당해도 저작권료 지급이 우선 정지된다.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뉴스 : (2)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내 용 :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수 진 모 씨가 경찰에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는 지난 8일 경찰서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샤방샤방’이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고소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진씨는 지난 2008년 7월 발매된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지난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며, 지난 6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또한 김씨와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을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진씨는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당사자 조사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의뢰 결과, 진씨가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 사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법원에서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인 상태다.

○○프로덕션 대표는 최근 스타뉴스와 만나 “‘샤방샤방’은 고등학교 시절 아이들과 자주 쓰던 단어들을 위주로 쓴 김씨의 순수 창작물이다”며 “감정 결과 이미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왔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스타뉴스 : (3) 『**법원, 원고요청 속 ‘샤방샤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내 용 :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 주장과 관련해 전문 기관의 감정을 다시 받는다.

‘샤방샤방’의 저작권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다시 의뢰하고 싶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샤방샤방’의 표절 감정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수사 기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전문 감정과는 별개로 절차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하지만 같은 기관에 관련 사건을 두 번씩이나 촉탁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가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에 대해서만 의뢰를 할 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성에 대한 주장도 너무 포괄적이다”며 “원고 측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감정 의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4일 변론기일을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샤방샤방’이 표절 시비가 일어난 것은 진 모 씨가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2008년 7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진씨는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지난 6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과 김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샤방샤방’의 표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의뢰, 진○○이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씨 측은 민사재판에서 “감정 결과가 편파적이었다”며 “감정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스타뉴스 : (4) 『**‘샤방샤방’ 작곡가 “표절누명 씹우려 악보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내 용 :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작곡가 김 모 씨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샤방샤방’의 저작권 침해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김씨는 “피고 진 모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부분의 악보가 일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최근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진씨가 감정기관에 제출한 ‘샤바샤바’의 악보는 실제 원곡의 음과는 다소 다르게 표시 돼 있다”며 “악보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감정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감정기관에 제출한 악보를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 ‘사바사바’의 악보에 적힌 음표를 ‘샤방샤방’의 음과 비슷하게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 향후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변론기일을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표절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앞서 진씨는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 속 ‘사바사바’ 표현을 2008년 7월 박현빈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지난 6월 ‘샤방샤방’ 작곡가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과 김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샤방샤방’의 표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의뢰, 진○○이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그림과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스타뉴스(<http://star.mt.co.kr>)의 홈페이지 음악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4)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1)~(4)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1)~(4)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1. 제 목 :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中”’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4일자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中”’라는 제목으로 ① ‘트로트 가수 박현빈(29)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샤방샤방’을 만든 작곡자 김○○(24)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김○○은 지난 1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표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바로 비교해서 들어보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올해 4월 초 전화상으로 김○○이 두 곡의 리듬이 같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작곡 담당 교수님들께 물어보니 교수님들도 두 곡의 분위기가 똑같다고 말했으며, 또한 신청인이 “서로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혹여 언론에 알려지면 서로 불명예스럽지 않겠느

냐”고 묻자, 김○○이 “진○○ 작가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되겠냐”고 묻기에, 신청인이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은 만나서 얘기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3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자신이 정작 떼뻗하면 돈을 왜 안내겠느냐’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으려 수차에 걸쳐 경찰과 저작권위원회에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경찰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상대방에 미루며 돈을 받지 않았으며 할 수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방송을 하여 언론에 부각되니 그제서야 서둘러 경찰에서 경찰의 수사비용으로 감정비를 냈다고 밝혀왔습니다.

③ 또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진○○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심지어 박현빈 씨가 SBS ‘강심장’에서 ‘샤방샤방’이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 내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고소를 하고 나서는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더라. 공동저작권자가 더 있는데 나만 고소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소한 후 연락을 한 것이며 강심장 등의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 김○○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동저작권자와 관련해서는 TV에 저작권자는 김○○으로만 나오고, 신청인이 경찰에 김○○ 이외의 다른 저작권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라고 경찰에 얘기했지만 경찰에서도 김○○이 대표적인 저작자이므로 다른 사람은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④ ‘대화과정에서 정말 협박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얘기한 것일 뿐 협박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김○○의 엄마와 삼촌이 연달아 전화가 와 가만 안 둔다고 수차에 걸쳐 협박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2)>

1. 제 목 :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13일자에서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라는 제목으로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가 경찰서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의뢰 결과, 진씨가 제기한 코드 진행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법원에서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당해 감정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현재 법원에서도 이러한 제반사항을 알고,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다시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이며 또한 편파적이고 일

방적인 감정을 하지 못하도록 최초 감정위원은 재감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감정위원의 이름을 곁고 책임을 다하라고 감정위원을 지정하여 재감정촉탁서까지 보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검찰처분에서 신청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님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3)>

- 제 목 :** ‘법원, 원고요청속 ‘사방사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26일자에서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가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나온 감정결과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에 대해서만 의의를 할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서는 가사 정도는 재판부 자체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감정 결과가 충분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4)>

- 제 목 :**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26일자에서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라는 제목으로 피고 김씨는 “피고 진 모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부분의 악보가 일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피고 김 모 씨가 악보를 위조해서 제출했지 신청인이 악보를 위조한 일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반론청구 - 조정성립

손배청구 - 취 하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오는 2012년 11월 30일(금)까지 [트로트 가요 ‘사방사방’ 표절 논란]에 대해 신청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사화 해, 2012년 12월 7일(금) 9시부터 24시간 동안 <스타뉴스> 홈페이지(<http://star.mt.co.kr>)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해당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신청인과의 인터뷰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제목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스타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기사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며 그 분량은 2012년 6월 14일 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와 동일한 정도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인과의 인터뷰 기사 제목을 모든 조정대상기사들(6월 14일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 10월 13일자 「‘샤방샤방’ 표절 의혹 제기 가수, 무고 혐의 피소」, 10월 26일 자 「법원, 원고요청 속 ‘샤방샤방’ 표절 논란 재감정 의뢰」 및 「‘샤방샤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위조」) 하단 ‘이 기사의 관련기사’에 게시해 제목을 누르면 제1항에 언급된 인터뷰 기사가 표시되도록 한다.

2012. 11.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스타뉴스: 『진○○ “‘샤방샤방’ 유사성, 우연일치라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내 용: 가수 겸 작곡가 진○○(본명 진○○)이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작사 작곡가 김 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배경 및 현재 심경 등을 직접 밝혔다.

진○○은 지난 2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지난 2006년 5월 자신이 작사 작곡해 발표한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를 김씨가 만든 ‘샤방샤방’이 가사 표현, 코드 진행, 템포, 곡 전체 분위기 등 여러 부분에서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김씨와 박현빈 소속사 ○○기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도 10월1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감정 결과가 타당해보인다”며 원고인 진○○에 소송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서 진○○측의 재감정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재감정 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 사이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는 경찰에 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샤방샤방’의 표절 논란과 관련, 진○○은 최근 스타뉴스와 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감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 결과가 왔으면 한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 ‘샤방샤방’에 대한 소송 제기 이유는.

▶ 소송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은 없다. 내가 만든 노래(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고 생각한 작품(샤방샤방)이 부각되고 또 잊을 만 하면 방송에 나와 신경을 건드렸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런 게 좀 컸다. ‘사랑의 포로’는 정말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인데 곡만 뺏기고 활동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활동 등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고소를 한 이유도 악의적이었던 게 아니다. ‘샤방샤방’을 만든 김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을 당하기 전에는 그쪽 입장들도 있었을텐데 제가 고소한 게 선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무고와 명예훼손을 당해 실제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니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라.

‘샤방샤방’ 작곡가 김씨와는 언제 처음 연락이 닿았나.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의 포로’와 ‘샤방샤방’이 흡사하다고 느껴 김씨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지난 2008년 4월께 처음 문의했다. 그랬더니 원칙상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 일단 음저협에 제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이후 두 달이 지난 2008년 6월이 되어서야 김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첫 통화에서 김씨에게 제가 가사나 곡의 리듬 구성 분위기 등이 유사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문제가 아니냐, 제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차근차근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김씨는 자기 주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은 며칠 후에 곧 군대를 간다고 했다. 문제 해결도 안한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갔다. 이후에는 김씨와 연락이 안됐다. 제가 유추를 해보니 군대에 갔던 것 같다.

이후 지난 4년 사이 저도 힘든 일이 있었다. 또 당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소송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어려운 일이 끝났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초까지 온 것 같다. 올 초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씨와는 연락이 안 돼 올 2월에 음저협에 다시 연락을 한 뒤 제가 포기를 하든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저협에서는 다시 한 번 원칙상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혹시 김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란 말을 해줬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느 실용음악학원 사이트에 김씨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올 4월 초에 제가 전화를 걸어 김씨와 통화를 했다. 그 때 김씨는 4년 전에 저와 통화한 뒤 자신과 ○○기획과 그 사안에 대해 검토했고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김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다.

– 현재 심정은.

▶저는 김씨를 헐박하거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갖고 있던 증거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제가 첫 감정 때 감정료 300만 원을 안내고 버텼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월 초에 감정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감정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을 내겠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랬더니 이 건은 저작권위원회에 내야하는 거라고 했다. 이후 저작권위원회에 내겠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경찰에 내야 한다고 했다. 서로 미뤄 진척이 안됐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감정이 진척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문의했고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진행하게 돼 감정료 낼 곳도 정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감정료를 냈다.

김씨가 합의를 안 해주니 제가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었다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저는 김씨를 경찰서에서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김씨가 설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을지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 내려 한 번, 이후 자료 내려 한 번 총 2번 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료를 내려 갔을 때는 담당 경찰이 휴무일이라 동료 경찰에게 자료를 주고 왔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 해주니 웃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외에 박현빈씨가 SBS ‘강심장’에서 ‘사방사방’이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표절 생각을 했다는 말, 제가 악보를 위조했다는 김씨의 말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저는 4월 초 김씨와 통화 뒤 2달 정도 있다 ‘강심장’을 인터넷에서 봤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명예훼손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또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했던 말 중 재검정과 관련 “가락에 대해서만 의뢰를 할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가사 정도는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지, 가사가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계획은.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이제 저 혼자 의사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쪽 입장도 있으니 모든 것은 재검정서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검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사례30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도리어 학우들에게 흥기나 하키채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41·42·43, 2012부산조정44·45·46(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주)광역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에서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전하면서 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서울에서 전학온 첫날부터 학우들에게 흥기를 집어던져 오히려 일부 학생들이 폭력을 당했고, 신청인이 다른 학생을 하키채 등으로 때리고,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찔렀다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병력 등 확인되지 않은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본인임에도 학우들을 폭행한 가해자로 잘못 보도되었으며, 개인 병력 등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비롯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 병력 등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울산광역매일 : 『**피해자·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1면)

내 용 :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2개월 동안 학우들에게 집단폭행 등을 당한 것과 관련, 피해 학생 가족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토록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울산시 교육청과 해당학교 등에 따르면 A군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적응하

지 못해 지난 8월 27일께 울산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 왔다.

피해 학생 A군은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중반까지 다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해 내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내과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해, 정신과 의사는 자연생태 공원이 있는 시골로 가서 병을 치료를 권장해 대안학교에서 다니던 중 지난 8월 27일 이 학교로 전학왔다는 학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서 전학 온 A군(11·4년)은 지난 8월 말경부터 같은 학급 남학생 7명으로부터 복부, 머리를 발로 차이고 뺨을 맞는 등 매일같이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것.

이에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군의 가족(남·2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0분께(4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A군 맞은 거 본 사람, A군에게 한대로 당하게 해주겠다. 거짓말하면 콩밥을 먹이겠다. 밖에 경찰차가 와있다”며 “A군이 맞은 것을 쓰라”고 A4용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작성토록 강요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가족이 학교 측에다 연락도 없이 4학년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에 건장한 남성 2명이 교실에 들어와 “거짓말하면 콩밥을 먹이겠다. 밖에 경찰차가 와있다” 등 어린 초등생들의 불모로 진술서 작성토록 강요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들은 공포 속에서 울면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또한 담임교사(여·59) 역시 몸을 떨며 위협을 느낀 교사는 진술서 작성 후 해당학교 교감에게 보고한 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모자를 눌러쓴 남자 1명과 A군의 형이 다리를 뻗은 자세로 쏙고 있는 상태라 교사는 제지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족은 지난달 26일 학생들을 불모로 작성한 진술서를 정리해 28일 한 포털 사이트에 “집단 폭력에 인생이 꺾인 동생을 도와주세요. 집단폭력피해로 정신장애증상 …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한 교사”라며 인터넷에 해당학교 ‘실명’과 ‘학급 반’까지 유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밀착 취재한 결과 피해학생 A군은 지난 8월 27일 서울서 울산으로 전학 온 첫 날부터 학우들에게 뽕족한 ‘젠가’ 등의 도구로 집어 던져 일부 학생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전학 온 날부터 ‘젠가’ 등의 도구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달래고 A군의 행동에 참아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가해학생 B군을 하키채 등의 도구로 때리고 욕설은 기본이며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찌르는 등 초등학생 4학년 보기에 드문 도구 등을 이용해 폭력을 일삼아, 일부 학부모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B군은 A군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넘어져 반대편 벽에 부딪쳐 머리가 들기까지 했다.

심지어 한 학생은 A군의 폭행으로 “무서워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학부모가 “지금 A군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학교에 오지 않아 ‘좋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생은 A군이 휘두른 하키채의 도구에 맞아 지금까지 오른쪽 아래 다리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 C군의 경우 체조 후 시합할 때 D군이 floor ball채를 가지고 왔는데 경기 도중 A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C군을 폭행하고 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학급 일부 학생들에게 젠가와 하키채 · 연필 등의 흉기로 학우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져, 일부 가해 학부모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일부 학생들은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A군도 피해자 이전에 가해학생들 또한 피해자라며, 원인제공은 A군이 도구를 이용해 폭력이 시작된 점에서 불거져 A군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제2, 3의 가 · 피해학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선정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과 각 출입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외부인이 수업 중에 침입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의 한 학부모는 “평상시에 활발한 아이가 이번 사건 이후 예전에 비해 폭식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호소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가 · 피해자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철저히 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②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울산광역매일 1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전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48시간 동안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저장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토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5일자 1면에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의 폭력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피해학생 가족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볼모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A군 맞은 거 본 사람, A군에게 한대로 당하게 해 주겠다. 거짓말 하면 콩밥을 먹이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가족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A군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 울산으로 전학 온 첫 날부터 학우들에게 흥기를 집어 던져 일부 학생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고, A군이 가해학생 B군을 하키채 등의 도구로 때리고 욕설은 기본이며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찔렀다는 등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군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집단으로 맞은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육시간의 하키채 폭행 이야기는 체육선생님도 사실을 모르는 일이며, A군과 같은 반 친구의 한 학부모께서 피해학생의 집에 찾아와 이런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A군이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필로 아이들을 찌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A군이 전학 온 날부터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달래고 A군의 행동을 참아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A군의 부모는 해당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A군이 피해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A군이 폭력을 일삼는 문제아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사과문>

나. 부제목 : -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다. 본 문 : 저희 울산광역매일은 지난 11월 5일자 1면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미성년자인 A군의 개인 신상(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본인 및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큰 피해를 입으신 A군과 A군의 가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울산광역매일 2012. 12. 6.자 1면에 2단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부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전학 온 초등생 집단폭행...)과 같은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2012년 12월 6일 9시부터 72시간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울산광역매일 홈페이지(<http://www.kyilbo.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HOT 코너 바로 밑)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에 넣어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뜨도록 하고, 제목, 부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부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4.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일자, 게재조건, 활자크기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및 해당 일자의 PDF 기사, 포털사이트에 매개된 모든 조정대상 기사를 2012년 12월 6일 9시 이전에 삭제 조치한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인 송○○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2.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과보도,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①

울산광역시매일 :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 『**[사과문]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탤런트인 신청인이 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85 · 1686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명 연예인인 신청인이 양평에 180평에 이르는 초호화 전원주택을 짓고 직원들을 포함, 20여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따로 운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MBC를 대상으로 정정 · 손해청구(2012서울조정1687 · 1688)하였고, 1차 조정심리 전 양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부모와 경비원까지... 20명 이상 대가족? 이○○ 부부, 셔틀버스까지 운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6일자 09:50)

내 용 : ▷ 리포터 : 그런가하면 올 봄 이○○씨 부부가 경기도 양평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이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 기자 : 저 뒷집이 이○○씨 집이라는데.

▷ 주민 : 네. 맞습니다.

▷ 기자 : 이○○씨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 주민 : 많이 봤죠. 옆집이니까. 집지을 때부터... 쌍둥이를 낳았는데 개들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집을 지었노라 처음에 말뚝 박을 때부터 와서 이야기를 했죠.

▷ 기자 : 맨 처음 시공 들어간 게 언제였어요?

▷ 주민 : 시공이 작년 10월 초였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저거 150평 넘을 텐데... 거의 180평 될걸.

▷ 기자 : 요즘도 자주 오시나요?

▷ 주민 : 여기서 살죠. 무슨 소리야 지금 ... 여기 와서 살죠. 전부.

▷ 기자 : 이미 이○○씨 가족이 한 달 전쯤에 이사를 들어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주민. 쌍둥이를 키우는 이○○씨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네요.

▷ 기자 : 이○○의 가족만 살고 있는지?

▷ 주민 : 내가 볼 땐 대가족이야. 무슨 집을 저렇게 크게 짓나 했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경비원이라든가. 보모들 ... 쌍둥이 보모가 두 명인가 되고, 한 20명 사는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영하다시피 출퇴근하고 있나 봐요.

▷ 기자 : 이 집에서요?

▷ 주민 : 네 이 집에서. 일사불란하게 셔틀버스도 운영하는거 같고 우리 아내가 7시에 차 타고 나가는데, 셔틀버스가 같은 시간에 나가고 ... 쌍둥이도 보모들이 항상 전통식으로 사랑 주면서 키우더라고요.

▷ 기자 : 쌍둥이 키우면서 잘 지내는 거네요?

▷ 주민 : 그럼요. 저렇게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같은 부모로서 존경합니다. 양육자제부터. 나중에 같이 집들이하기로 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해줄게요.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의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 초호화 전원주택’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또는 ‘이○○ 초호화 전원주택’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6일에 이○○ 씨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 씨가 건평만 180평에 이르는 초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요양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

하여 대지 구입대금, 공사비용 등 총 9억 원의 비용을 들여 2층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호화 전원주택이라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은 이○○ 씨의 전원주택에 직원들을 포함하여 2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 이○○ 씨는 현재 촬영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크라이슬러 미니밴 차량(시가 3,500만 원 상당)과 기아 모하비 SUV 차량(시가 2,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을 뿐, 직원들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을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1532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4일자 09:50)

내 용 : 2012. 11. 26. 방송한 <기분좋은 날 - 연예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이○○ 씨가 약 595㎡ (180평)에 이르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장면은 인근 주민의 추측에 따른 인터뷰였을 뿐,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방송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